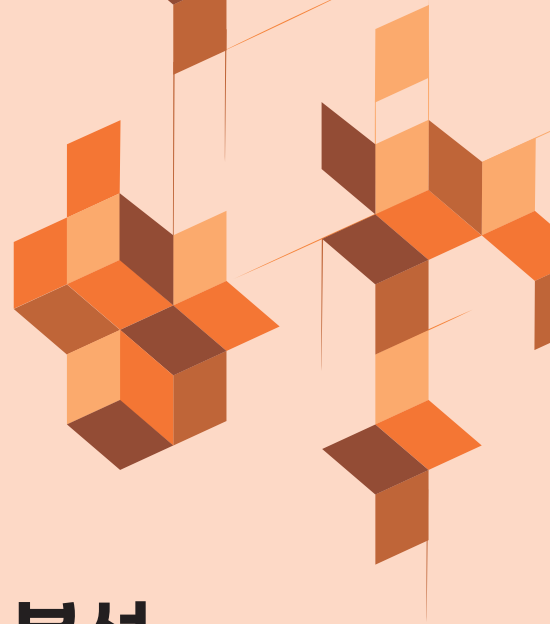


관세연구 19-02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2019. 10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2019. 10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다 운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관세사

김 미 정 연구원

목 차

I. 서론	7
II.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개요	10
1. 전자상거래 개요	10
가. 정의	10
나. 전자상거래의 대상	12
다. 전자상거래의 유형	15
2.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18
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대상	18
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절차	19
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현황	30
III.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	35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분류	35
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35
나. 3D 프린팅	41
2. 소액물품의 과세	49
가. 소액면세	50
나. 소액물품의 간이세율	56
3. 구매대행 거래의 관세평가 방법	64
가. 구매수수료 인정 여부	66

나. 수출판매 여부	76
4. 보세창고도 거래 물품의 FTA 적용	88
가. 협정별 규정	88
나. 쟁점 사항	100
IV. 시사점	104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분류	104
2. 소액물품의 과세	105
3. 구매대행 거래의 관세평가 방법	108
4. 보세창고도 거래 물품의 FTA 적용	112
참고문헌	115
부록 I.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서식	118
1.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	118
2.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119
3.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127
4. 통관목록	128

표 목차

〈표 II-1〉 OECD 지침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정의	11
〈표 II-2〉 소액면세 자가사용 인정 기준	20
〈표 II-3〉 간이세율	24
〈표 II-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31
〈표 II-5〉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비중(특송물품)	32
〈표 II-6〉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비중(우편물)	33
〈표 II-7〉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	34
〈표 III-1〉 소액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표	60
〈표 III-2〉 과세가격에 따른 우편물의 배송 및 납세방식	62
〈표 III-3〉 한-EFTA FTA 탁송품 분리 직접운송 인정 예시	90
〈표 III-4〉 직접운송 규정이 있는 FTA	91
〈표 III-5〉 직접운송 규정이 없는 FTA	99
〈표 III-6〉 전자상거래 물품 대(對) 홍콩 수입 현황	101
〈표 III-7〉 2018년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현황	102

I. 서론

- 인터넷 보급 확산, 생활방식의 변화 등의 이유로 온라인 쇼핑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와 구매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무역형태로 떠오르고 있음
 - 온라인을 통한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시간·장소의 제약없이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편리성뿐 아니라 면세 혜택 등에 따른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용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무역형태가 나타나면서 기존의 규범, 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하는 거래 또는 기존의 규범, 법령이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관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온라인 전송방법으로 거래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규범이 결정되지 않고 있음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물품으로 볼지 용역으로 볼지 국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
 - 이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거래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나 과세방법이 달라지고 있어 과세형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로 거래된 물품은 대부분 우편 또는 특송으로 운송되는데 우편물과 특송물품은 금액에 따라 관세 등이 면제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통관될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 취지가 점차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함
 -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세입에 대한 과세행정의 부담 및 납세협력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한 것이지만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과세형평의 문제, 과세 회피를 위한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또한 우편물과 특송물품의 통관과 관련하여 별도의 고시가 적용됨에 따라 배송 방식에 따라 통관 절차나 세율 적용 등이 달라지고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는 구매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대행수수료에 대한 과세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음
 - 구매대행수수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함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 용역의 범위를 넘어선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구매대행업자는 구매자의 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바 이 경우 연속적인 거래가 발생함에 따라 어떤 거래를 수출판매로 보아 거래가격으로 결정할지 또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전자상거래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의 경우 물류비용 절감, 최적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물류센터를 이용한 거래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지 쟁점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국제 거점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이용한 거래는 보세창고도 거래로서 해당 거래로 수입되는 물품은 FTA 협정국이 원산지라 하더라도 일부 FTA 협정에서는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하여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I. 서론 9

- 이 경우 소액면세 기준을 넘어선 금액의 물품이나 기업이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관세 등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관세 과세상 여러 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해당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완화 또는 개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제II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통관 및 과세 절차, 통관 현황 등을 살펴봄으로써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에 대한 규정 마련 또는 정비의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 제III장에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 제IV장에서는 앞선 장들에서 살펴본 쟁점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II.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개요

1. 전자상거래 개요

가. 정의

- 전자상거래란 물품 또는 용역의 매매거래에서 거래의 성립, 이행과 같은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함
 - 거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주문과 이에 대한 승낙으로 성립되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또는 인도 및 그 대가에 대한 지급으로 이행됨
 - 전자적인 처리란 물품 또는 용역을 교환할 때 전자적인 매체가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최근에는 인터넷이 보편화됨에 따라 온라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만을 일컫기도 함

- OECD는 전자상거래란 주문을 하거나 받는 것이 컴퓨터 네트워크상으로 이루어지는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 또는 구매라고 명시하여 전자상거래의 정의와 해석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였음¹⁾
 - OECD의 정의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를 규정하는 핵심요소는 주문방식이며, 인터넷을 통해 주문이 이루어진다면 지불과 배송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전자상거래로 간주되는 것임
 - OECD의 정의는 UN, APEC 등 각종 국제논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음²⁾

1) OECD, *OECD Guide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1, p. 73.

〈표 II-1〉 OECD 지침에 따른 전자상거래의 정의

구분	정의	해석상의 지침
영문	An e-commerce transaction is the sale or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conducted over computer networks by methods specifically designed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or placing of orders. The goods or services are ordered by those methods, but the payment and the ultimate delivery of the goods or services do not have to be conducted online. An e-commerce transaction can be between enterprises, households, individuals, governments, and other public or private organis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포함: 웹페이지, 엑스트라넷(extranet), EDI를 통한 주문 •제외: 전화 통화, 팩스, 손으로 타이핑한 이메일 (manually typed email) 을 통한 주문
국문	전자상거래는 주문을 하거나 받는 목적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법으로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행해지는 상품과 서비스의 매매 행위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는 상기 방법으로 행해지지만, 지불과 최종 배송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전자상거래는 기업, 가정, 개인, 정부, 그리고 기타 공공·민간 조직 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	

자료: OECD, 2011, p. 73.

- 우리나라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전자상거래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함³⁾
 -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 전 세계적인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를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자 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를 국경 간 전자상거래라고 함
 -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유사한 의미로 해외직접구매라는 표현이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전자상거래에서의 매매행위 중 구매 거래만을 지칭하는 표현임

2)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이민영,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p. 29.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 해외직접구매와 반대되는 개념인 역직구는 전자상거래에서의 판매 행위를 일컫는 표현임

- 국경 간 전자상거래 중 물품의 거래는 매매 행위를 통하여 물품이 국경을 이동하므로 수출입 통관 및 관세 과세절차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관세 관련 법령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물품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만으로 좁게 정의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물품의 주문, 대금결제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상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함⁴⁾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물품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전자상거래로 보아 통관 및 과세절차를 살펴보고, 관세를 과세하는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함

나. 전자상거래의 대상

- 전자상거래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을 매매하는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의 대상은 물품 또는 용역이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물품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국한하므로 물품만을 전자상거래 대상으로 보고자 함
- 물품은 일반적으로 값어치가 있는 물건으로 형태가 있는 유체물을 뜻하지만, 사람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무체물을 포함하기도 함
 - 「민법」 제98조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무체물도 물건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는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고

4)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제2조 제2호

정의하여 물품에 포함될 수 있는 무체물의 범위를 넓히고 있음

- 물건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는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함⁵⁾

□ 특히 물품에 포함되는 무체물 중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저장·전송될 수 있는 무체물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라고 하는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방법으로 거래가 가능함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는 소프트웨어,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를 말함⁶⁾
 - 영상물에는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함

□ 온라인을 통하여 거래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그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국경을 통과하더라도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이행하거나 관세를 과세할 수 없음

- 반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디스크, 테이프, USB 등 전달매체에 저장되어 유형의 물품으로 거래되는 경우 관세 관련 법령의 대상으로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세의 과세대상이 됨

□ 이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물품으로 볼 것인지 용역으로 볼 것인지 국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국제적인 규칙은 확립하지 못하고 있음

- 온라인 전송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국제무역규범도 달라지며, 이를 물품으로 보는 경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용역으로 보는 경우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6)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

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이 적용됨

- 두 협정 모두 WTO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를 명시하고 있지만, GATS는 최대 10년간 최혜국 대우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분류에 따라 관세의 과세 여부, 적용 국제무역규범이 달라지므로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대립되고 있음
 - 미국은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무체물을 용역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보고 FTA 협정체결 시 영구적으로 무관세원칙을 적용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⁷⁾
 - 반면 EU는 조세수입의 감소를 우려하여 온라인 무체물을 용역으로 간주하여 미국과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⁸⁾
 - OECD는 온라인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전송되는 무체물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재화 외의 것(용역)으로 보도록 합의함⁹⁾
- 우리나라는 「관세법」, 「부가가치세법」에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용역으로 간주하고 있음
 - 관세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 과세되는데, 관세율표에는 유형의 물품만을 분류하고 있으며, 따라서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관세의 과세대상인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또한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으로 국내에 제공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를 전자적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음¹⁰⁾

7) 미국은 싱가포르와의 FTA를 통해 전자적 전송물을 디지털 상품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무관세 원칙의 영구 적용에 합의한바 있음

8) EU는 2003년 7월 역외에서 전자상거래 형태로 역내로 반입되는 “전자적으로 공급되는 서비스 (electronically supplied service)”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9) OECD, “Taxation and Electronic Commerce-Implementing the Ottawa Framework Conditions,” 2001, p. 18.

10)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다. 전자상거래의 유형

1) 거래방식에 따른 유형¹¹⁾

-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른 분류로 거래과정이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 온라인형과 오프라인형 거래로 분류할 수 있음
 - 온라인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체결과 그 거래의 이행이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함
 - 인터넷을 통한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및 판매, 교육 및 법률 등의 디지털화가 가능한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됨
 -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온라인 전송 거래는 온라인형 거래에 해당함
 - 오프라인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의 체결과 대금지급 등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한 거래단계 외 실물상품의 이전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함
 - 온라인 쇼핑몰 등이 포함됨

2) 거래주체에 따른 유형

- 전자상거래를 행하는 거래주체는 기업(business)과 소비자(consumer) 그리고 정부(government)가 있으며, 각 거래의 당사자에 따라 전자상거래 유형을 구분할 수 있음
 - 기업·소비자 간(B2C), 기업 간(B2B), 기업·정부 간(G2B), 정부·소비자 간(G2C), 소비자 간(P2P) 등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11) 유재걸,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03. 2, pp. 230~231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3) 거래형태에 따른 유형¹²⁾

- 해외직접구매는 거래형태에 따라 크게 ① 직접배송 ② 배송대행 ③ 구매대행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직접배송

- 직접배송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한 후 중간 배송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받는 형태임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결제 후 국내로 직접 배송받는 방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제외하고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이용과 큰 차이가 없음

나) 배송대행

- 배송대행은 해외 판매자가 국내까지 직접배송을 하지 않거나 그 비용이 상당한 경우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해외 배송대행지에서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로 배송받는 형태임
 - 해외배송대행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의 배송 용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구매한 재화 등의 배송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함¹³⁾
 - 해외 배송대행지는 배송대행업체에서 해외 현지에서 운영하는 물류창고로, 해외 배송대행 이용자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결제 시 배송대행업체의 배송대행지 주소를 기입함

12) 한국소비자원, 2016, pp. 3~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13)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1&cciNo=1&cnpClsNo=2>, 검색일자: 2019. 7. 18.

다) 구매대행

- 구매대행은 소비자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주문·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대행 업체에 물품가격·물류비·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임
 - 해외구매대행의 일반적 의미는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해외 사이버몰의 재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 사이버몰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입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말함¹⁴⁾

- 구매대행은 2가지 방식으로 ① 구매대행쇼핑몰에 게재된 해외제품을 바로 주문하는 방식인 쇼핑몰형 ② 구매하고자 하는 해외제품의 구매대행 견적을 요청한 후 예상비용을 통보받아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인 위임형으로 구분됨
 - 쇼핑몰형은 오픈마켓과 같이 여러 판매자가 해외제품을 판매페이지에 등록하는 방식과 일반 쇼핑몰처럼 구매대행업체가 현지구매 가능한 제품을 자체 운영하는 쇼핑몰에 게재하는 방식이 있으며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과 거의 동일함
 - 판매자 및 제품에 따라 제품 판매가격에 관세 및 부가세가 합산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고 있음
 - 위임형은 구매대행업체에 구매희망 제품의 견적을 요청하고 현지상품구입비용, 대행수수료, 해외운송료 등 구매대행비용을 통보받은 뒤 이를 결제하여 구매하는 방식임

14) 법제처,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Seq=835&ccfNo=1&cciNo=1&cnpClsNo=2>, 검색일자: 2019. 7. 18.

2.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가.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대상

- 우리나라는 「관세법」에 따라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관리하고 있음
 - 「관세법」에서는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¹⁵⁾ 통관이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한다고¹⁶⁾ 정의하여 통관 및 관세의 과세 대상이 물품임을 명시하고 있음

- 관세의 부과·징수 대상인 물품은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으로 우리나라는 전기에너지 제외의 유형 재화에 대하여만 관세율을 명시하여 관세를 과세하고 있음
 - 「교토협약」에서는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에 반입 또는 반출될 때 부담하는 관세율표상에 규정된 조세를 의미한다고¹⁷⁾ 정의함으로써 관세의 과세 대상이 관세율표에 기재된 물품임을 규정함
 - 관세율표란 각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을 기재한 표로 해당 표에 명시되지 않은 물품은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관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음

- 또한 통관의 대상이 되는 물품도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여 반입·반출·이동·장치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 유형의 재화를 말함
 - 수입·수출·반송과 같은 통관 절차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장치·반출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물품이 물리적으로 운송이 가능한 유형의 재화여야 함을 의미함

15)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

16) 「관세법」 제2조 제13호

17) 교토협약 개정의정서 일반부속서 제2장 정의 E8./F11.

- 따라서 전자상거래 물품 중 「관세법」에 따라 통관되고 관세가 과세되는 물품은 유형의 재화만을 말하며, 전자적 무체물은 통관 및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나.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절차

- 전자상거래 물품은 국제우편, 특송 또는 일반 운송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거나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며, 운송방식에 따라 그 통관 방법이 달라짐
 - 당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에 대한 연구이며,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한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수입통관 및 과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일반통관 물품

- 전자상거래 물품이 일반 운송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¹⁸⁾
 -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입요건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¹⁹⁾
- 일반통관 물품은 수입신고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²⁰⁾ 과세 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함²¹⁾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함²²⁾

18) 「관세법」 제241조 제1항

1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1항

20)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시)

21) 「관세법」 제15조(과세표준)

22) 「관세법」 제27조 제1항

- 다만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소액으로 수입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가격신고가 생략되거나 관세를 면세할 수 있음
-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은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²³⁾
 -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되며²⁴⁾,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 다음의 것은 제외됨²⁵⁾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표 II-2〉 소액면세 자가사용 인정 기준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농림수 축산물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버섯, 더덕 호두 잣 소,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 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시 요건확인을 받 아야 함)
한약재	인삼(수삼, 백삼, 홍삼 등)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합 300g 300g 검역 후 150g 각 3k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용은 검역 후 500g(면세범위 포함) 까지 과세통관 • 면세통관범위 초과인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2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46조 제1항

24)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25)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표 II-2〉의 계속

종류	품명	자가사용인정기준 (면세통관범위)	비고
	뱀, 뱀술, 호골주 등 혐오식품		• CITES규제대상
	VIAGRA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		•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건강기능식품	총6병	•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 다만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 완제의약품
	의약품	총6병(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생약(한약)제제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 삼편환 백봉환, 우황청심환	100ml×2병 8g入×20병 10T×3갑 50T×3병 400T×3병 30T×3병 10알 30알	•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 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十全大補湯, 蛇粉, 鹿胎膏, 秋風透骨丸, 朱砂, 虎骨, 雞骨, 熊膽, 熊膽粉, 雞膽, 海狗腎, 鹿腎, 麝香, 男寶, 女寶, 春寶, 青春寶, 強力春寶 등 성분미상 보신제		
마약류	芬氣拉明片, 鹽酸安非拉同片, 히로뽕, 阿片, 大麻草 등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대상
야생동물 관련제품	호피, 야생동물가죽 및 박제품		• CITES규제대상
기호물품	주류 킬런 엽킬런 전자담배	1병(1ℓ 이하)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킬런형 200개비 기타유형 110g	•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대상 •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기타담배 향수	250g 60ml	
기타	•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 허용 •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자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

2) 국제우편물

- 「관세법」에서는 우편물의 경우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의 경우 현장통관 우편물 또는 심사대상 우편물로 구분되어 상이한 통관 및 과세 절차가 적용됨

가) 현장통관 우편물

- 우편물의 경우 X-ray 검색기에 의한 검사, 현품검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가격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현장에서 통관할 수 있으며, 과세 여부에 따라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로 구분하여 처리됨
 - 현장면세란 검사결과를 통해 「관세법」 등에서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면세처리하는 것을 말함²⁶⁾
 - 현장과세란 검사결과 세액산출에 곤란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세하는 것을 말함²⁷⁾
- 세관장은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을 제외한 면세통관이 명백히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면세처리할 수 있음²⁸⁾
 - 현장면세 대상 우편물은 다음과 같음
 - 「관세법」 제94조에 따른 소액물품 등의 면세에 해당하는 물품
 -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에 따른 합산과세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

26)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호

27)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2호

2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현장면세)

- 「관세법」 제40조 징수금액의 최저한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물품
 - 그 밖에 면세통관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물품
-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우편물을 일반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취인은 사유서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할 수 있음²⁹⁾
- 수입신고는 현장면세되어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취인은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재반입하여야 함
 - 세관장은 재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현품을 확인한 수 이를 수리할 수 있음
- 현장과세 물품은 우편물신고서 또는 송품장 등을 기초로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납부세액을 수취인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함³⁰⁾
- 현장과세 물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 아닌 물품
 -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 세액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물품
 - 현장과세 물품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물품의 경우 20%이며,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별도의 간이세율이 적용됨
 - 세관장은 현장과세한 물품의 수취인이 간이세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기본세율 등으로 세액을 재산정하여 과세함³¹⁾
 - 통관우체국장은 과세처분을 취소한 물품이 통관우체국으로 다시 반입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29)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현장면세된 물품의 재반입에 따른 수입신고)

30)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현장과세)

3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현장과세)

〈표 11-3〉 간이세율

품명	세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나. 보석·진주·별갑·산호·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55 92만 6천원 + 46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 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물품 가. 모피의류,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 나.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신발류 다. 녹용	30 25 3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고급모피와 그 제품, 고급용단, 고급가구, 승용자동차, 수렵용 총포류, 주류 및 담배를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 나. 제1호 및 제3호에 불구하고 여행자가 휴대수입하는 물품으로 1인당 과세대상 물품가격의 합산총액이 미화 1천불 이하인 물품	20

자료: 「관세법 시행령」 별표 2

나) 심사대상 우편물

-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에서 제외된 물품은 심사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 통관처리함³²⁾
- 심사대상 우편물이란 X-ray 검사, 현품검사결과 과세 및 수입요건 확인 등을 위해 수취인으로부터 가격자료 등을 제출받아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는 물품을 말함³³⁾

3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1항

33)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호

- 세관장은 심사대상물품에 대하여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를 통관우체국장에게 전산
으로 통보하고, 통관우체국장은 이를 세관장 명의로 수취인에게 통지하여야 함³⁴⁾
 -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서에는 세액결정을 위한 가격자료, 수입허가서나 추천서
등 수취인이 보완해야 할 통관 시 구비서류와 서류의 제출방법, 일반수입신고
대상 여부, 통관이 허용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함

- 심사대상 우편물 중 일반수입신고대상을 제외한 우편물은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
고할 수 있음³⁵⁾
 - 간이수입신고를 하려는 수취인은 모바일, 인터넷, 전자우편, Fax, 우편, 방문 등
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의 관세 등 제세는 과세가격에 품목별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됨³⁶⁾
 -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
청서에 협정세율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산지증명 면세대상인 경우 구매
영수증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³⁷⁾
 - 세관장은 간이통관 처리된 우편물에 대하여 과세 등 필요한 처분을 완료하였을
때 국제우편물 통관내역서를 통관우체국장에 전송하고, 통관우체국 장은 이를
수취인에게 우편물과 함께 교부함³⁸⁾

- 우편물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것이거나 그 밖의 기준에 해
당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³⁹⁾

34)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4항 내지 제5항

35)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간이통관대상 우편물)

36) 관세청, http://www.customs.go.kr/kcshome/main/content/ContentView.do?contentId=CONTENT_00000000080&layoutMenuNo=67, 검색일자: 2019. 6. 28.

37)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제4항

3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통관내역서 교부)

39) 「관세법」 제258조 제2항

-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과 같음⁴⁰⁾
 -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또는 수취인이 일반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⁴¹⁾
- 우편물의 수입신고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하기 5일전 또는 도착 후에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도착 후 신고를 하여야 함⁴²⁾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 10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 농·수·축산물 또는 그 가공품으로서 수입신고하는 때와 입항하는 때의 과세단위가 변경되는 물품

3) 특송물품

- 「관세법」에서는 특송물품 또한 우편물과 같이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특송으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

40)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

41)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42)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신고의 시기)

- 다만 「관세법」 제81조에서는 탁송품⁴³⁾에 대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간이통관되는 특송물품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하지는 않음

가) 목록통관 특송물품

- 탁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건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⁴⁴⁾
 - 특송업체가 목록통관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때에는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⁴⁵⁾
 - 통관목록에는 물품의 송하인 및 수하인의 성명·주소·국가, 물품의 품명·수량·중량 및 가격, 운송업자명, 선박편명 또는 항공편명, 선하증권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⁴⁶⁾
 - 미국과의 협정에 따른 특송물품 통관의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을 할 수 있음⁴⁷⁾
 - 그러나 다음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⁴⁸⁾
 - 의약품
 - 한약재
 - 야생동물 관련 제품
 -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 건강기능식품
 -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 식품류·주류·담배류

43) 「관세법」에서는 특송물품을 탁송품이라고 칭함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도 「관세법」에 따른 규정은 탁송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44)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45)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항

46) 「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2항

47)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1호

48)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수하인은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할 수 있음⁴⁹⁾
 -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함
 -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나) 간이신고 특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 협정에 따른 특례물품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고 2,000달러 이하인 특송물품은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음⁵⁰⁾
 - 간이신고 특송물품을 수입통관하려는 때에는 첨부서류없이 인터넷·EDI 등을 이용하여 전자서류로 수입신고하여야 함⁵¹⁾
 -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은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49)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

50)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2호

51)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제2항

- 다음 물품의 경우 간이신고를 배제하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⁵²⁾
 -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
 -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관세법」 제82조에 따른 합의세율 적용신청물품, 「관세법」 제232조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류 제출대상물품, 「지방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담배소비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34조의2에 따른 자동차세 납세담보확인서 제출대상물품
 -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
 - 「관세법」 제83조에 따른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사후관리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 「관세법」 제250조에 따라 신고취하 또는 신고각하된 후 다시 수입신고하는 물품
 - 해체·절단 또는 손상·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적용대상 물품
 -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여 세관장이 간이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다)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⁵³⁾
 -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일반통관절차를 적용함
 - 일반수입신고 특송물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2,000달러 이하면서 개인이 수입신고하는 전자상거래물품 등과 같이 우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스마

52)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항
 53)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제3호

트 통관을 할 수 있음⁵⁴⁾

- 스마트 통관 대상 수입신고전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통관시스템에 접수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할 수 있음

다.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현황

- 전자상거래 물품은 수입통관 시 수입신고서 등 수입통관을 위한 서식에 전자상거래 여부를 기재함으로써 통관 및 과세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 일반운송, 우편, 특송으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이 일반수입통관되는 경우 수입신고서의 거래구분에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물품을 표시하여야 함
 - 우편물이 간이통관되는 경우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에 전자상거래 구매 사이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 다만 현장면세 또는 현장과세는 구입경로를 파악하지 않으므로 전자상거래 물품 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특송물품의 통관목록에도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거래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 간이신고되는 특송물품은 수입신고서와 동일한 서식으로 통관되므로 거래구분에 전자상거래 여부를 표시할 수 있음

1)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 관세청에서는 특송으로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현황을 목록통관과 수입신고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음
 - 2018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건수는 약 3,225만건으로 약 27억 5,494만달러에 상당하였음
 - 이 중 목록통관 물품이 건수로 약 59%, 금액으로 약 43%를 차지하였음

54)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2(스마트통관)

- 이는 2017년 대비 약 866만건, 약 6억 4,470만달러 증가한 수치임
 - 최근 10년간 통관 현황을 보면 2015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 전자상거래 규모는 증가하였으며, 2016년 이후 그 증가폭도 점점 커지고 있음

〈표 II-4〉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현황

(단위: 천건, 천달러)

구분	목록통관		EDI 수입신고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1,453	73,959	1,057	92,886	2,510	166,845
2010	1,075	56,416	2,504	217,815	3,579	274,231
2011	1,818	105,073	3,784	367,204	5,602	472,277
2012	2,845	213,324	5,099	493,882	7,944	707,206
2013	3,807	330,716	7,352	709,322	11,159	1,040,038
2014	6,588	569,725	8,942	975,190	15,530	1,544,915
2015	9,065	714,803	6,777	806,423	15,842	1,521,226
2016	9,763	719,282	7,632	915,259	17,395	1,634,540
2017	13,217	886,811	10,375	1,223,429	23,592	2,110,240
2018	19,158	1,179,064	13,097	1,575,880	32,255	2,754,944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7. 1.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된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특송물품 수입 건수 및 금액 대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건수 및 금액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2018년에는 전체 4,210만건의 특송물품 수입건수 중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3,225만건으로 약 77%를 차지함
 -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10년간 매년 약 6~11%의 증가폭을 보이고 있음

- 전자상거래 물품의 비중을 금액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체 특송물품 수입 금액 대비 약 14%로 건수에 비해 금액 비중이 매우 작음
 - 이는 전자상거래 물품이 다수의 소액 건으로 수입된다는 점을 보여줌

〈표 II-5〉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비중(특송물품)

(단위: 천건, 백만달러)

구분	특송(목록통관 및 EDI 수입통관)					
	특송(A)		전자상거래(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7,858	5,326	2,422	159	31%	3%
2010	8,777	6,789	3,319	255	38%	4%
2011	11,508	11,506	5,598	469	49%	4%
2012	14,141	14,207	7,941	704	56%	5%
2013	17,721	15,133	11,155	1,036	63%	7%
2014	22,589	15,896	15,531	1,545	69%	10%
2015	23,501	15,806	15,842	1,521	67%	10%
2016	26,929	16,874	17,377	1,622	65%	10%
2017	33,341	18,518	23,592	2,110	71%	11%
2018	42,107	19,508	32,255	2,755	77%	14%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 일자: 2019. 7. 1.

- 우편물의 경우도 특송물품과 마찬가지로 전체 우편물에서 전자상거래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건수 및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음
 - 2018년 우편물이 수입된 건수는 5만건으로 이 중 8%에 해당하는 4천건이 전자상거래 물품이었음
 - 전체 수입통관된 우편물 중 전자상거래 물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로 시작하여 2018년에는 8%로 꾸준히 증가하였음
 -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약 3%로 우편물의 경우도 전체 건수에 비해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작았음

〈표 II-6〉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비중(우편물)

(단위: 천건, 백만달러)

구분	우편물(EDI 수입통관)					
	우편물(A)		전자상거래(B)		비율(B/A)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	61	128	1	1	2%	1%
2010	64	156	2	2	3%	1%
2011	62	164	4	3	6%	2%
2012	60	157	3	4	6%	2%
2013	55	144	4	4	7%	3%
2014	51	139	3	6	6%	4%
2015	50	130	4	8	8%	6%
2016	48	128	3	4	6%	3%
2017	46	123	3	4	6%	3%
2018	40	123	3	4	8%	3%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 일자: 2019. 7. 1.

2)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

- 수입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을 과세 여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과세된 경우보다 면세된 경우가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음
 - 2018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 3,255만건 중 3,058만건이 면세로 통관되었으며 이는 약 95%를 차지하는 비율임
 - 최근 10년간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신고건 중 면세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5%로 대부분의 전자상거래 물품이 소액면세를 적용받고 있음
 - 반면 2018년 전자상거래 물품이 수입되는 금액 27억 5,494만달러 중 면세되는 수입금액은 20억 434만달러로 약 73%가 면세되고 있음
 - 최근 10년간 면세물품의 금액 비중은 2013년을 기준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면세물품의 수입건수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액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것은 고액의 물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함

〈표 II-7〉 전자상거래 물품 과세 현황

(단위: 천건, 천달러)

구분	면세통관		과세통관(B)		합계(C)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비중)	금액(비중)	건수	금액
2009	2,385(95)	135,401(81)	125(5)	31,444(19)	2,510	166,845
2010	3,369(94)	219,303(80)	210(6)	54,928(20)	3,579	274,231
2011	5,289(94)	381,156(81)	313(6)	91,121(19)	5,602	472,277
2012	7,602(96)	600,075(85)	342(4)	107,131(15)	7,944	707,206
2013	10,725(96)	885,306(85)	434(4)	154,732(15)	11,159	1,040,038
2014	14,896(96)	1,291,838(84)	634(4)	253,077(16)	15,530	1,544,915
2015	15,043(95)	1,212,865(80)	798(5)	308,360(20)	15,841	1,521,225
2016	16,583(95)	1,273,749(78)	812(5)	360,791(22)	17,395	1,634,540
2017	22,367(95)	1,582,185(75)	1,225(5)	528,055(25)	23,592	2,110,240
2018	30,589(95)	2,004,347(73)	1,657(5)	750,597(27)	32,255	2,754,944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
일자: 2019. 7. 1.

Ⅲ.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분류

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거래는 소프트웨어 등의 무체물 자체가 전자적 전송·다운로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경우와 디스크, 테이프 등의 전달매체를 통해 수출입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집적회로·반도체 등의 장치와 이들 장치가 결합된 기계·기구 등에 체화된 형태로 수출입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품목분류 및 관세 평가상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체화된 기계·기구·장치와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논의하지 않음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거래되는 방식에 따라 현행 「관세법」상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이에 따라 통관 및 관세 부과 대상 여부 또한 달라짐
 - 전송·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통관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
 - 반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디스크, 테이프 등의 전달매체에 저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통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관세의 과세대상이 됨
 - 실제 전달매체가 주로 분류되는 제8523호는 관세율이 0%이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중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거래되는 방식에 따라 관세의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온라인 전송물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 규범이 통일되지 않아 「관세법」상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관세법」상 유형의 물품에 대해서만 품목분류·관세율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태 없이 국내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됨

1) 주요국 규정 및 동향

가) WTO

- 1998년 5월 WTO 회원국들은 WTO 제2차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채택하여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음⁵⁵⁾
 - WTO에서의 전자상거래 논의는 미국이 WTO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의 관행을 성문화할 것을 주장한 데서 시작됨⁵⁶⁾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치의 연장은 일반이사회가 전자상거래 관련 무역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수립한 작업계획의 진전사항을 고려하여 합의하에 결정될 것이라고 선언함⁵⁷⁾
- WTO 일반이사회는 1998년 9월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을 채택하여 이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었지만 많은 쟁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은 이루어지지 못하였음⁵⁸⁾

55) WTO,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WT/MIN(98)/DEC/2)," 1998. 5. 25, p. 1.

56) WTO, "1998a. Global Electronic Commerce: Proposal by the United States(WT/GC/W/78)," 1998. 2. 9.(박지현,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9, p. 4에서 재인용)

57) 박지현, 2018, p. 5.

- 그 이후의 각료회의에서 모두 한시적으로 차기 회기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 이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2017년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2019년으로 예정된 차기 각료회의까지 전자적 전송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현재 관행을 유지하는 것에 합의하고, ‘전자상거래 공동선언⁵⁹⁾’을 발표함⁶⁰⁾
- 또한 제11차 각료회의는 1998년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명시된 지침을 기초로 전자상거래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계속하는 데 합의함

나) 미국

- 미국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 일관되게 무관세와 소비세 비과세를 주장하고 있음⁶¹⁾
- 이에 따라 1998년 「인터넷 조세면제법(Internet Tax Freedom Act)」을 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내국세뿐만 아니라 관세 과세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였음⁶²⁾
- 이에 따라 미국은 소프트웨어, 서적 또는 영화 등의 물리적 대체물이 존재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은 물품으로 보아 전달매체인 물리적 대체물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봄

58) 박지현, 2018, p. 5.

59)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WT/MIN(17)/60),” 2017. 12. 13.

60) 박지현, 2018, p. 5.

61) 정지선·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4. 7, p. 74.

62) 미국 예산정책우선센터(CBPP), <https://www.cbpp.org/archives/512webtax.htm>, 검색일자: 2019. 6. 24.

- 예를 들면 음악과 같이 전달매체가 여러번 바뀔 수 있는 수많은 콘텐츠 제품은 유체물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함⁶³⁾
 - 또한 게임 CD의 콘텐츠는 하드드라이브 또는 네트워크에 복제할 수 있으며, 이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송하면 소비자는 이를 다시 CD에 저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물품으로 보아야 함
 - 저장매체가 주로 분류되는 제39류와 제8523호는 WTO 협정세율인 0%의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전자적 전송물도 이와 동일하게 무관세가 적용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임
- 따라서 미국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전자적 전송도 물품이므로 GATT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GATT가 GATS보다 광범위하게 무역자유화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임⁶⁴⁾
- 미국은 전자상거래 기술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을 영구화·규범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음

다) EU

-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 문제에 대해 EU는 모든 전자적 전송물이 용역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국제적 규범으로 GATS가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함⁶⁵⁾
 - 이에 따라 온라인 거래에서 다른 거래형태의 용역의 제공과 형평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음⁶⁶⁾

63) 권현호,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2018. 2, p. 393.

64)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WT/GC/16)," 1999. 2. 12.

65) WTO,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Classification Issue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WT/CG/W/497)," 2003. 5. 9.

66) 송선욱, 2001, p. 126.

- 따라서 EU는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무관세 관행이 영구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EU는 2019년 말 종료되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부과 면제조치의 영구적인 연장을 포함한 초안을 작성하여 WTO에 제출함⁶⁷⁾

- 1997년 12월 미-EU 정상회담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관세 분야의 합의를 통해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⁶⁸⁾
 - 미국과의 관세 분야의 합의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됨
 -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
 -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주문되었다는 이유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말 것

라) 일본

-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 문제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GATT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⁶⁹⁾
 - 2001년 6월 일본 정부는 전달매체를 통하여 국경을 넘는 소프트웨어 등의 거래는 GATT 원칙의 적용을 받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되는 동일한 상품도 GATT 수준에서의 대우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힘

- 전자적 전송물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하여 잠정적인 동결조치(stand still)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WTO에서 법적·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동안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임⁷⁰⁾

67) 서진교·김종덕·박지현·김민성·엄준현, 『제11차 WTO 각료회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 p. 11.

68) 송선욱, 2001, p. 127.

69) 일본 경제산업성, *Electronic Commerce on WTO*, 1999. 5. 11.

70)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mofaj/gaiko/wto/jk_12.html, 검색일자: 2019. 6. 26.

2) 쟁점사항

-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야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통상 문제는 기존의 통상규범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임⁷¹⁾
 - 현행 제도에서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문제의 해결을 위해 통상규범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과정은 대부분 관련 WTO 협정을 유권해석하여 조치를 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또한 GATT와 GATS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발되고 있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종서비스에 대한 WTO 규범상의 지위가 모호해지고 있음⁷²⁾

-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무체물은 「관세법」상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관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관세납부의 의무도 없음
 -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세관의 통제가 불가능하며, 전자화된 디지털 상품이 국경을 통과하는 시점에 그 사실을 알 수 없게 되어 관세부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⁷³⁾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경우와 달리 전달매체에 기록된 거래에 대해서는 CD, USB,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의 전달매체가 유체물이므로 기존의 상품무역과 동일한 형태로 통관 및 과세됨
 -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는 전달매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프트웨어 가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기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가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됨

71) 최동오·박석호, 「전자상거래관련 통상문제의 WTO 규범적용」,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대회, 2010, p. 414.

72) 최동오 외 1인, 2010, p. 416.

73) 김문환·이성환·정영철·박재수·나강·신찬호, 「通關段階 知的財産權保護範圍 擴大方案 研究」, 2007. 12, p. 355.

- 그러나 현재 전달매체에 대한 관세율은 0%의 실행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질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음

- 이와 같이 동일 물품에 대한 무형의 온라인 거래와 유형의 오프라인 거래 간의 과세체계의 이중성으로 인한 과세차별이 존재함
 - 무형의 온라인 거래는 물리적 운송대상이 없기 때문에 통관절차가 불필요하여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유형의 오프라인 거래는 상품이 구매자에게 인도되기 위하여 세관을 통과하게 되므로 관세부과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음

- 온라인 거래 상품의 국제상거래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등의 전자적 무체물을 「관세법」상 수출입 개념에 포섭하여 수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⁷⁴⁾
 - 이는 일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외국의 입법례와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관세부과 방안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는 아직 의견 제기수준에 불과하며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연구는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음

나. 3D 프린팅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과 같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전송물이 나타남
 -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하여도 물품 또는 용역으로의 분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74) 박형래, 「글로벌시대 전자상거래와 수출입통관」, 『한국관세포럼』, 한국무역협회, 2006. 6, p. 24.

- 특히 3D 프린팅의 경우 설계도면이 즉각적으로 물품화될 수 있는 기술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과 유형의 원료가 투입되어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3D 프린팅은 CAD(Computer Aided Design) 설계도에 따라 합성수지, 금속성 가루, 목재, 고무, 바이오 재료 등을 점층적으로 뿌리면서 3차원 형태로 형상화하는 기술임⁷⁵⁾

- 3D 프린팅 공정은 제품 출력을 위한 설계도를 제작하는 모델링, 3D 프린팅 기기를 이용한 프린팅, 최종상품화를 위한 후처리 과정의 3단계로 구성됨⁷⁶⁾
 - 모델링은 CAD와 같은 소프트웨어 또는 3D 스캐너를 사용해 디지털 도면을 제작하는 단계임
 - 프린팅은 설계도를 불러들여 실제로 제품을 출력하는 단계이며, 후처리 과정은 3D 형태의 제품 출력 후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매끄럽게 하는 과정임

- 모델링 작업을 통해 제작된 디지털 설계도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경우 설계도는 관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설계도를 사용하여 출력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과세됨에 따라 관세 과세상 문제점이 발생함
 - 구매자가 3D 설계도를 제품 생산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설계도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은 생산지원비용으로 3D 프린팅 제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 이 경우 현행과 같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련 규범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거나 전자적 전송물을 용역으로 분류하는 경우 관세당국은 생산지원비용을 포착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과세누락의 가능성도 높아짐

75) 김빛마로·유현영·김민경,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p. 35.

76) 김빛마로 외 2인, 2016, p. 36.

- 즉, 3D 프린팅 설계도가 온라인으로 전송되어 거래되는 경우 관세당국은 거래 여부를 포착하기 쉽지 않고, 거래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조건, 금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1) 주요국 규정

가) WTO

- 「WTO 관세평가 협정」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⁷⁷⁾
- 생산지원비용이란 수입물품의 수출을 위하여 생산 및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아래 물품 및 용역금액을 적절히 배분한 금액임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재료
 -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다만 수입 국내에서 수행된 것은 제외함)

나) 우리나라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⁷⁸⁾

77)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78) 「관세법」 제30조 제1항

- 생산지원비용이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의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말함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금형·다이스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디자인(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함)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을 고려하여 배분하여야 함⁷⁹⁾
 - 또는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을 고려하여야 함
 -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함⁸⁰⁾
 - 당해 물품 및 용역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차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79)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

80)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당해 기술 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의 금액

다) 미국

-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등을 가산한 가격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됨⁸¹⁾
 - 생산지원비용이란 수입물품의 구매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물품의 생산 또는 미국으로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물품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차액을 말함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되는 지원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됨
 -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원자재,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와 유사한 품목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공구, 다이스, 금형 및 이와 유사한 품목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 미국 이외의 곳에서 개발되었고,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 설계, 도안, 계획 및 스케치(다만 미국 내 거주하는 자에 의해 이행된 것, 수입물품의 구매자의 피고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일하는 자에 의해 이행된 것, 미국 내에서 개발된 다른 기술, 설계, 디자인, 계획 및 스케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 생산지원비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수치화할 수 있는 정보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 과세가격에 가산됨⁸²⁾
 - 생산지원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되며, 당해 비용이 충분한 정보에 의하여 산정되지 않은 경우 거래가격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사용될 수 없음

81) 19 U.S.C. 제1401a조

82) 19 U.S.C. 제1401a조

-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을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구매할 경우 그 구매비용 또는 수입자나 수입자와 관련 있는 자가 생산한 경우 그 생산비용
- 비용에는 생산지원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지까지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됨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은 사용, 수리, 변경 등 생산지원물품 또는 용역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반영하여 조정됨

라) 일본

- 일본도 수입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을 더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⁸³⁾
 - 생산지원비용이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 의해 무상 또는 할인되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인화된 차액을 말함
 - 생산지원물품 및 용역은 다음의 것을 포함함
 - 수입물품에 포함된 재료, 부분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공구, 금형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물품
 -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으로 일본 이외에서 개발된 것
- 수입물품의 생산을 위해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은 일본 이외에서 개발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으로 가산되는데, 일본 이외에서 개발된 것이란 실제의 작성이 일본 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된 것을 말함⁸⁴⁾

83)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84)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2 (4)

- 당해 기술 등에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장소, 작성자의 국적은 불문함
- 다음과 같은 경우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됨
 - 구매자가 외국에서 개발된 제법에 관한 기술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당해 기술을 무상으로 해외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기초로 수입물품을 생산하게 한 경우
 - 구매자가 외국에서 작성된 의장을 구입, 당해 의장을 무상으로 해외의 생산자에게 제공하여 이에 기초하여 수입물품을 생산하게 한 경우

2) 쟁점사항

- 「WTO 관세평가 협정」과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모두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있음
 - 생산지원비용은 수입물품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되도록 구매자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된 차액을 말함
- 따라서 3D 프린팅 설계도가 물품인지 용역인지와 관계없이 구매자로부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생산자에게 제공되었다면 당해 금액은 3D 프린팅 제품의 수입 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관세가 과세됨
 - 그러나 3D 프린팅 설계도가 온라인으로 전송된 경우를 용역으로 분류한다면 당해 생산지원비용을 과세가격에 정확하게 가산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움
- 이로 인하여 3D 프린팅 설계도라는 생산지원에 대한 비용이 과세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
 - 수입자의 입장에서는 3D 프린팅 설계도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때에 세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3D 프린팅 설계도 가격이 3D 프린팅 제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움

- 또는 관세당국이 3D 프린팅 설계도에 대한 거래 여부 및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3D 프린팅 제품에 대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3D 프린팅 설계도에 대한 가격을 고의로 누락할 수도 있음
- 또한 용역으로 분류된 3D 프린팅 설계도가 생산지원비용으로써 3D 프린팅 제품의 가격에는 포함이 되지만 당해 제품의 원료로는 인정되지 않아 원산지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경우 3D 설계도의 가격만큼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원료의 가격으로는 반영되지 않아 부가가치 계산 방법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이 보다 엄격해지거나 수월해질 수 있음
 - 반대로 3D 설계도를 물품으로 본다면 3D 설계도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반영될 수 있음
 - 또한 세번변경기준의 경우 3D 설계도가 개발된 국가가 아니라 원료가 3D 프린터로 분사되어 세번이 변경된 작업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함
 - 만약 3D 설계도가 물품으로 분류된다면 3D 설계도의 개발이 제품 생산의 핵심과정인 경우 3D 설계도가 분류되는 세번을 제외 규정으로 두어 3D 설계도를 반드시 원산지 재료로 사용해야 함을 규정할 수 있음
- 이러한 생산지원비용 관련 문제는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3D 프린팅 설계도를 물품으로 보아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관세를 부과한다면 완화 또는 개선될 수 있는데, 이는 전자적 전송물의 물품으로의 분류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함
 - 기존에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세관감독의 부재, 과세형평의 저해와 같은 이유로 물품으로의 분류 필요성이 제기된 반면,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발생하고, 전자적 전송물의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2. 소액물품의 과세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되는 물품의 상당수는 개인인 구매자가 자가 사용하는 것으로 소량주문·소액이라는 특징이 있음
 - 전자상거래는 구매자의 구매주문으로 거래가 성립되는 소매거래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최종 소비재의 거래가 대부분임

-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하여 납세자의 편의 도모, 관세행정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거나 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상당수가 소액물품에 해당하여 수입통관 시 면세를 적용받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간이세율을 적용받음⁸⁵⁾

- 소액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면세적용은 소비자가 국내 구매보다 해외직구를 선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이로 인하여 국내 구매자와의 과세형평, 저가신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적발하기 위하여 세관에서는 위험관리를 통한 검사 강화, 성실신고 안내 등의 활동을 하는데, 결국 관세행정 인력·비용이 투입됨에 따라 소액면세 제도의 도입취지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는 실정임

- 그리고 전자상거래 물품이 주로 수입되는 형태인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하여 일정 금액 이하의 것에 대하여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적용기준이 상이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취지와는 달리 납세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음

85) 자세한 통관 현황은 II-2.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및 과세 참조

가. 소액면세

1) 주요국 규정

가) 미국

- 미국은 동일인이 하루에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선적지에서의 총공정소매가격(aggregate fair retail value)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제세를 면세함⁸⁶⁾
 - 개인용품 등 기타의 경우 800달러 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됨
 - 소액면세 규정의 특혜는 단일 주문 또는 계약과에 관련된 물품이 소액물품 면세 이익을 받고자 분할하여 발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미국의 1인당 관세면제 한도는 2016년 3월부터 2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바 있음
 - 이에 따라 800달러 이하의 통관물품에 대한 관세면제는 과거 200달러 이하 물품에 적용되던 것과 동일한 절차와 제한이 적용됨

나) EU

-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EU 역외국에서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와 소비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⁸⁷⁾
 - 다만 Heligoland섬, Büsingen, Ceuta, Melilla, Livigno, Campione d' Italia 및 Lugano 호수의 영토에서 발송된 화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EU 역외국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됨

86) 19 U.S.C. 제1321조 Administrative exemptions

87)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taxation_customs/individuals/buying-goods-services-online-personal-use/buying-goods/buying-goods-online-coming-from-a-noneu-union-country_en#customs_declaration, 검색일자: 2019. 7. 8.

- EU 회원국은 EU의 부가가치세 지침(VAT Directive)을 준수하되 적용 세율은 회원국 및 상품 유형별로 상이함
- 그러나 EU 역외국에서 구매한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연방규정 setting up a Community system of reliefs from customs duty⁸⁸⁾ 제5장에서 소액물품의 관세면제 요건을 규정함
- 제5장(CHAPTER V Consignments of negligible value)은 미소가격 물품에 대한 관세면세를 규정하며, 이는 역외국에서 구매한 물품(Business to Consumer)에 대하여 적용됨
- EU 역외국에서 구매한 물품의 단일 화물 총가격이 15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관세가 면제됨⁸⁹⁾
- 10~22유로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며, 10~22유로를 초과하고 150유로 이하의 물품은 관세가 면제됨⁹⁰⁾
 - 면제대상물품의 가격 범위는 물품을 수입하는 개별 회원국에 따라 10~22유로로 상이함
- 다만 알코올 제품과 향수 및 화장수 그리고 담배 및 담배제품은 관세면제 적용 대상이 아님⁹¹⁾

다) 일본

- 일본은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그 관세를 면제하

88)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1186/2009

89)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CHAPTER V Consignments of negligible value 제23조

90) European Court of Auditors, *Import procedures: shortcomings in the legal framework and an ineffective implementation impact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EU*, 2017, p. 52.

91)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CHAPTER V Consignments of negligible value 제24조

는 무조건 면세제도를 두고 있음⁹²⁾

- 다만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외할 수 있음

□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물품이란 단일 신고와 관련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 또는 우편물에 대하여는 하나의 소포로 포장된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의 것을 말함⁹³⁾

- 단일 송품장에 관련된 화물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송품장에 관련된 모든 화물의 과세가격을 합계한 것으로 함
- 동일 송하인으로부터 동일 수하인에게 동일시기에 분할하여 우송된 우편물의 경우 당해 분할된 모든 우편물의 과세가격을 합계한 것을 당해 우편물의 과세가격으로 함
- 예를 들면 우편물의 중량제한에 의해 분할하여 우송된 경우가 있음

□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인 소액물품의 경우 관세와 소비세 및 지방세가 면제되나 다음에 유의해야 함

- 과세가격 합계액이 1만엔을 초과하는 것은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함⁹⁴⁾
- 주세·담배세 등의 내국소비세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의 합계액이 1만엔 이하일지라도 과세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함⁹⁵⁾

2) 쟁점사항

□ 주요국 모두 일정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 제세가 부과되지 않는 소액면세 규정을 두고 있음

92) 일본 「관세정률법」 제14조 제18호

93)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21 (1)

94)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21 (4)

95)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4-21 (5)

- 소액물품 등의 면세는 과세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물품에 대하여 무역활동 지원, 납세자의 편의 및 징수 비용절감 등의 정책적 목적으로 관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임
 - 그러나 이러한 기존 면세취지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해외직접구매와 국내 구매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 저가신고를 이용한 과세회피 문제
 -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문제

가) 해외직접구매와 국내 구매자 간의 과세 형평성 문제

-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반입하는 소액물품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국내 소매판매 업체를 통해 구입한 소비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⁹⁶⁾
 - 국내 소매판매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소액의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해외직접구매의 경우에는 소액물품이면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해외직접구매가 하나의 소비패턴으로 자리잡으면서 그 규모가 증가할수록 국내 판매자는 해외 판매자에 비하여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역차별을 당하게 되며, 조세수입 또한 감소하게 됨
- 한편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와 국내 소매판매 업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국가의 경우 해외 온라인 판매업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임⁹⁷⁾

96)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2015. 10. 5.

97)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1085500009>, 2018. 5. 1, 검색일자: 2019. 7. 12.

-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국내 소매판매 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바,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판매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Good and Service Tax. 15%)를 징수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임
 - 2019년 10월 1일부터 해외직구 상품에 이른바 '아마존세'가 부과될 예정임
- 뉴질랜드 이외에도 호주는 2019년까지, 유럽연합(EU)은 2021년까지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러한 방안에 따라 기존에는 면세로 해외 판매업체의 물품을 직접 온라인으로 구매했던 소비자들이 향후에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됨

나) 저가신고를 이용한 과세회피 문제

- 현행 소액면세제도상 150달러(미국발 200달러)를 초과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관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이를 150달러 이하로 저가신고하는 경우가 과세회피 문제를 야기함
 - 개별소비자의 해외직접구매에 대해서는 그 구입가격을 검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됨
- 전자상거래에서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저가신고와 허위신고의 여러 가지 유형이 존재하고 있음
 -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는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고의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물품의 신고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요청할 수 있음
 - (구매자가 지불한 관세와 부가세를 구매대행 업체가 편취하는 경우) 구매대행 업체의 경우 배송편의를 위해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물품의 신고가격은 150달러 이하로 저가신고하고 발생하지 않는 관세와 부가세를 업체가 편취할 수 있음
 - (상품의 가격을 허위로 표기하여 구매자들을 속이는 경우) 가격경쟁력을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비해 가격을 낮게 표기하여 구매자들을 속일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과거 통관사례 중 저가신고 의심물품에 대해 검사대상시스템에 등록하여 세관신고 시 검사대상으로 선별토록 하는 등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나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계속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⁹⁸⁾
- 과거와 달리 해외직접구매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와 관련된 세수 수입의 손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대응방안을 세워야 할 것임⁹⁹⁾

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하는 문제

- 현행 소액면세제도상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은 물품가격이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됨
- 자가사용 목적의 구매 물품이 아니라면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기본세율 등을 적용하여 과세됨
-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반입하는 소액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분산 반입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 구입자는 다른데 배송주소지가 같은 경우, 동일이름이 많이 나오는 경우, 연락처상 전화번호는 하나인데 주소지가 같은 경우 등 한 사람이 물품의 구매가격을 150달러 이하로 나누어 분산반입하는 방법이 적발됨
- 실제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면세받은 물품을 개인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온라인 상에서 재판매하는 사례가 만연한 상황임¹⁰⁰⁾
- 서울세관에 따르면 직구되팔이의 위법성을 실시간 문자·전화 등으로 직접 안내

98)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2. 28, p. 12.

99) 심충진·정규언,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6, p. 9.

100) 조세일보,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9/06/20190618378620.html>, 검색일자: 2019. 7. 16.

하는 계도활동(1만 6,000여건)을 통해 주요 사이트에 게시되는 우범 게시글이 월 평균 2만건에서 2019년 5월 기준 1,300여건으로 급감하였다고 밝힘

-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반입하는 소액물품의 재판매 행위는 기존 면세취지에 어긋나는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저해할 수 있음
 -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와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한편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소액물품의 자가사용 여부에 따른 판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자가사용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세 성격을 지닌 관세를 면제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나. 소액물품의 간이세율

1) 주요국 규정

가) 미국

-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되는 소액물품의 경우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우편 또는 화물운송을 통해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Informal Entry)이 가능함¹⁰¹⁾
 - 다만 섬유제품, 기타 쿼터·비자 제한의 적용을 받는 물품은 물품가액과 상관없이 정식통관의 대상임
 - 간이통관 절차는 정식통관과 달리 담보(Entry Bond) 제공이 면제됨
 - 정식통관의 경우에는 세관의 서류심사 및 물품 검사 후 수입물품에 대한 문제

101) 19 CFR § 143.21 Merchandise eligible for informal entry

점이 없으면 반출허가를 하고, 수입자는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Entry Bond)를 제출하고 물품을 반출할 수 있음

- 간이통관 적용 물품은 소액면세물품을 포함하여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의 선적의 경우
 - 다른 시기에 도착한 분할선적의 가치가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한 위탁품의 부분으로 이러한 부분이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소액물품 면세기준(물품가액 800달러 이하)이 적용되는 물품

- 우편물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2,500달러 이하의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신고가 면제되고 간이통관이 적용되며,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물품의 경우 물품가액이 800달러 이하이어야 함¹⁰²⁾
 - 관세 및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우편물을 제외한 모든 우편물은 정식통관(Formal Entry)이 필요함¹⁰³⁾
 -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개별화물이 여러 차례에 걸쳐 우편 발송(신고 또는 기타 우편물로 표시)되는 경우 CBP에 같은 시간에 도착하고 단일 주문 또는 계약서에 의하여 2,500달러를 초과하더라도 관세납부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면 정식통관을 위하여 통합될 수 없음
 -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우편물이 CBP로 송부될 경우 CBP 직원은 우편신고서(CBP Form 3419 또는 3419A)를 첨부하여 배송과 관세징수를 위해 우체국(US Post Office)에 반환함¹⁰⁴⁾

- 특송물품의 경우 2,500달러 이하의 선적품은 간이신고가 가능하며, 2,500달러 이하의 개별 선적품은 한 항목에 통합될 수 있음¹⁰⁵⁾

102) 19 CFR § 145.31 Importations not over \$800 in value

103) 19 CFR § 145.12 Entry of merchandise

104) 19 CFR § 145.12 Entry of merchandise

- 특송화물(Express Consignment)에 관한 규정에서는 특송화물을 포함한 특송물품 운영업자 및 운송업자(express consignment operators and carriers)가 반입하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¹⁰⁶⁾
 - 특송물품 운영업자 및 운송업자는 세관이 국제 운송업자로 인정하고 보세물품의 운송인으로 승인받아야 하며, 세관 양식(Customs Form 301)을 통해 관세담보를 신고해야 함¹⁰⁷⁾
- 미국은 소액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이 적용되고 있으나 별도로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는 없음

나) EU

- 「EU 신관세법」에서는 간이통관(simplified customs declaration)¹⁰⁸⁾과 목록통관의 형태인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Entry in the declarant's records)¹⁰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간이통관의 경우 세관은 특정인에 대해 세관절차 규정의 적용에 필요한 모든 명세의 일부와 증빙서류를 생략하는 간이신고를 허가할 수 있음¹¹⁰⁾
 - UCC 제166조~제169조는 간이신고에 관하여 규정함
 -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의 경우 세관은 특정인이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세관신고를 제출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음¹¹¹⁾
 - UCC 제182~제184조는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에 관하여 규정함

105) 19 CFR § 128.24

106) 19 CFR § 128.0 Scope

107) 19 CFR § 128.22

108) UCC 제166조

109) UCC 제182조

110) UCC 제166조 제1항

111) UCC 제182조 제1항

- 그러나 이러한 간이통관과 신고인의 장부에 기재하는 방식의 경우 AEO 업체만 가능하며, 그 적용대상이 소액수입물품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소액 수입물품의 간이통관절차와는 관계가 없음
- 또한 소액물품에 적용하는 간이세율에 대한 규정도 명시하고 있지 않음

다) 일본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통관 및 과세 절차는 일반운송, 우편물, 특송물품으로 구분하여 적용됨
- 일반운송물품 중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소액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와 운송서류에 추가사항 기재로 수입신고서를 대신할 수 있음¹¹²⁾
 - 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납세)신고서 또는 수입(인취)신고서에 ‘소액물품 간이통관처리’라고 표시하여 신고하도록 함¹¹³⁾
 - 다만 상기 신고심사 결과 소액물품 간이통관처리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수입(납세)신고서 또는 수입(인취)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의 보충 등을 하도록 하고, 일반수입 절차를 거치도록 함¹¹⁴⁾
 - 소액물품 간이통관 처리 화물에 적용하는 세번, 세율 및 타법령의 허가·승인 등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는 포괄심사를 필한 화물을 제외하고 이후 수입신고의 선택으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함¹¹⁵⁾
 - 또한 수입(납세)신고에 대해 항공화물운송장(AWB) 또는 송품장으로 일반수입(납세)신고서에 대신할 수 있도록 함¹¹⁶⁾

112)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1

113)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2 (1)

114)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2 (2)

115)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3

116) 일본 「관세법 기본통달」 67-4-4

- 또한 과세가격 20만엔 이하의 소액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일반관세율과는 별도로 정한 간이세율이 적용됨¹¹⁷⁾
- 간이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품목분류를 크게 7개의 범주에서 세율을 적용함
 - 간이세율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또한 수입자가 수입화물에 대해 간이세율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함

〈표 III-1〉 소액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표

품목		관세율
1	주류 (1) 와인 (2) 소주 등 증류주 (3) 청주, 사과주 등	70엔/리터 20엔/리터 30엔/리터
2	토마토 소스, 빙과, 선텐 모피(드롭 스킨), 모피 제품 등	20%
3	커피, 차(홍차 제외) 선텐 모피(드롭 스킨 제외) 등	15%
4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등	10%
5	플라스틱 제품, 유리 제품, 비금속(구리, 알루미늄 등) 제품, 가구, 장난감 등	3%
6	고무, 종이, 도자기, 철강 제품, 주석 제품	면세
7	기타	5%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sukan/kanizeiritsu.htm>, 검색일자: 2019. 7. 24.

- 수입물품이 국제우편을 통해 운송되는 경우 통관절차는 ①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 ②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음¹¹⁸⁾
- 외국에서 보내 온 우편물 중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지방식이 적용되며 과세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됨¹¹⁹⁾

117) 일본 「관세정률법」 제3조의3

118)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검색일자: 2019. 7. 24.

- 무관세 및 면세의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우편물의 수취인에게 물품을 직접 배달함
 - 1만엔 이하의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과세통지서와 물품을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수취인이 세금납부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음
 - 1만엔 이상 3만엔 이하의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물품의 도착과 세액 등을 전화 등으로 연락하며 물품의 수령 방법은 ① 세금 등을 즉시 지불할 경우 ② 세금 등을 바로 지불할 수 없는 경우로 구분됨
 - ①의 경우: 수취인이 원하는 경우 물품이 직접 배달되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음
 - ②의 경우: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과세통지서가 송부되기 때문에 과세통지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를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음
 - 3만엔을 초과할 경우: 과세통지서가 송부되지만 물품은 배달되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은 과세통지서를 지참하고 지정된 우체국 등에 가서 납부서 교부를 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우편물을 수령할 수 있음
- 외국에서 보내 온 우편물 중 과세가격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방식이 적용되며, 다음의 절차를 따름¹²⁰⁾
- 우편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수취인에게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통관 수속의 안내 문서를 전송함
 - 안내 문서를 전송받은 수취인은 수입(납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일본우편주식회사 및 기타 통관업자에 수입 통관 수속을 의뢰하거나 직접 우편물이 보관되어 있는 세관에 가서 수입(납세)신고를 해야 함
 - 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한 후 수입이 허용되면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됨

119)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검색일자: 2019. 7. 24.

120)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검색일자: 2019. 7. 24.

〈표 Ⅲ-2〉 과세가격에 따른 우편물의 배송 및 납세방식

구분	세금합계액	세금 납부	우편물의 배송 및 납세방식
과세가격 20만엔 이하	1엔(무세·면세)	×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 배송
	1만엔 이하	×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국제우편물 과세통지서와 함께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 배송
	1만엔 이상 3만엔 이하	○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우편물의 도착과 세액 등을 수취인에게 통지 후 ① 수취인에게 직접 물품 배송 ② 수취인이 지정우체국 등에서 물품을 수령
	3만엔 초과	○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 직접 배송 불가, 수취인이 지정 우체국에서 인도받아야 함
관세가격 20만엔 초과	-	○	일본우편주식회사에서 수취인에게 통관절차 안내문서를 발송 후 일반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 진행

자료: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검색일자: 2019. 7. 24.

- 국제택배를 이용하여 물품을 받는 경우 통상적으로 택배업체가 통관 업무를 대행함¹²¹⁾
- 일본에서는 특송화물과 일반화물의 구분없이 통관업체에 의한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되어 있음
 - 다만 특송화물로서 과세가격이 20만엔 이하의 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소액화물 간이통관 취급을 받아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음

2) 쟁점사항

- 주요국 모두 소비를 위한 통관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따라 정식통관과 간이통관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며, 소액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121)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tsukan/kojinyunyu.htm>, 검색일자: 2019. 7. 24.

- 우리나라는 신고특례제도로써 특송물품의 경우 목록통관과 간이신고를, 우편물의 경우 현장면세 및 간이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미국은 2,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일본은 20만엔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한 간이통관제도와 운송서류에 추가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수입신고서를 대신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수입물품 통관에 대한 규정이 우편물과 특송물품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 규정 간 세부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관세법」과는 별도로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고시」 등의 소액물품의 통관 특례 규정들이 하위법으로 분산되어 있음
 - 예를 들면 우편물의 간이통관은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00달러 이하인 물품에 적용되나, 특송물품의 간이신고는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00달러 이하인 경우 적용됨
 - 반면 미국(2,500달러 이하)과 일본(20만엔 이하)의 경우에는 모두 소액기준을 우편 또는 특송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또한 「관세법」에서는 특송물품 또한 우편물과 같이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고시에 따라 우편물에만 간이세율이 적용되며 특송화물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우편물의 통관은 현장과세와 간이통관의 경우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
 - 따라서 동일 물품이더라도 우편물 또는 특송물품의 배송방법에 따라 세율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우편물과 특송물품에 관한 간이통관과 간이세율이 별도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 체계가 다소 복잡하다고 볼 수 있음
- 일본의 경우 20만엔 이하의 우편물과 특송물품을 포함하는 소액수입물품에 대해서는 간이통관과 간이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통일되어 규정되어 있음

3. 구매대행 거래의 관세평가 방법

- 국경 간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도 무역의 한 형태로서 국내구매자가 해외에 있는 물품·배송서비스 등을 직접 찾거나 이를 제공하는 판매자·운송업자 등과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구매자는 물품을 인수하지 못하거나 운송 중에 손상·멸실 등이 되는 등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함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는 구매자가 직접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하고 직접 물품을 배송받는 방식 외에 배송대행, 구매대행과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배송대행, 구매대행 형태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판매자와 구매자 외에 배송서비스, 판매자와의 소통, 물품검사 등을 수행하는 대리인이 거래당사자로 참여하게 됨
- 배송대행업자 또는 구매대행업자는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해당 수수료를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할지 여부는 전자상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짐
- 배송대행수수료는 운송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운송료와 함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임¹²²⁾

12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구매대행수수료는 구매자가 자신을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으로 판매자의 이익에 귀속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
- 특히 구매대행 형태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양함에 따라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가 관세평가에서 인정하는 구매수수료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구매대행업자가 구매대행 외에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와 구분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¹²³⁾
 - 그러나 구매대행업자가 추가로 수행하는 업무가 구매대리의 범위를 넘어 실질적인 물품의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
- 구매대행업자가 실질적인 구매·판매활동을 하는 경우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와 국내 구매자 간 거래가 각각 발생하게 되며, 이 중 어떤 거래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보아 과세가격을 산정할지 결정하여야 함¹²⁴⁾
 -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와의 거래를 수출판매로 본다면 당해 거래가격에 운송료 등의 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 반대로 구매대행업자와 국내 구매자 간의 거래가 수출판매로 인정된다면 당해 거래가격에 수입 후 발생한 운송비용, 우리나라에서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등이 공제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구매수수료, 수출판매 관련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구매대행 형태의 전자상거래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123)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124)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가. 구매수수료 인정 여부

1) 주요국 규정

가) WTO

- 「WTO 관세평가협정」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¹²⁵⁾
 - 구매수수료란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해외에서 그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하여 그의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함¹²⁶⁾
- 즉 구매수수료는 구매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구매대리인은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지만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행동하는 자임¹²⁷⁾
 - 구매대리인은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운송·보관 및 해당 물품 인도에 대한 주선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용역을 제공함¹²⁸⁾
- WCO 예해에서는 관세평가 목적상 수수료의 처리는 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의 정확한 본질에 달려있다고¹²⁹⁾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수수료가 경우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기도 하며, 구매대리인이 대리인의 역할을 넘어 판매자 또는 구매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따라서 구매수수료의 가산 여부, 구매대리인의 인정 여부는 구매대리인이 제공

125)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제1항

126)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 I. 주해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a)호(i)

127) WCO 해설 2.1 제4항

128) WCO 해설 2.1 제9항

129) WCO 예해 17.1 제2항

하는 용역의 정도, 위임자와 대리인과의 관계, 수수료의 성격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함

- 구매대리인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용역 이외의 어떠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부가적인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은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음¹³⁰⁾
 -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 업무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것보다는 물품의 소유권으로부터 초래된 이윤에 대한 손실 또는 이익을 부담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없음
 - 즉, 구매대리인이 거래에 대한 통제활동 또는 거래가격을 통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행동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재산적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임

- 또한 구매대리인과 위임자 간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함¹³¹⁾
 - 특히 구매대리인과 판매자, 대리인과 판매자의 특수관계자의 관계는 구매대리인이 구매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계산으로 행동하거나 자신의 계산으로 행동하도록 하므로 검토가 필요함

- 구매대리인이 제공한 용역과 관련하여 청구된 보수를 검토하여 부가적인 용역을 조사하여야 하며, 구매대리인이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청구된 총보수는 구매수수료로 간주될 수 없음¹³²⁾
 - 구매대리인이 일반적인 기능의 범위를 벗어나 수출지까지의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직접 물품을 운송하고 각종 경비를 운송비에 포함시키는 경우 구매대리 용역과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구매수수료로 간주될 수 있음

130) WCO 예해 17.1 제10항 내지 제11항

131) WCO 예해 17.1 제12항

132) WCO 예해 17.1 제15항

나) 우리나라

- 우리나라도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함¹³³⁾
 -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금액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가 포함되지만, 구매수수료는 제외됨

-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¹³⁴⁾
 -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임¹³⁵⁾

- 우리나라도 WCO 예해와 마찬가지로 구매수수료 또는 구매대리인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구매수수료 외의 다른 비용이 포함된 경우 해당 비용을 구매수수료와 구분할 수 있고 다른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면 가산하여야 함¹³⁶⁾
 - 구매대리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대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음¹³⁷⁾
 -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권리가 있는 경우
 -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133) 「관세법」 제30조 제1항

134)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135)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136)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137)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다) 미국

- 미국 또한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인 거래가격을 기초로 관세 과세 가격을 결정하며, 구매자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는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비용 중의 하나임¹³⁸⁾
 - 따라서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으나 「WTO 관세평가협정」과 달리 가산되는 수수료에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하는 방식이 아니라 판매수수료만을 가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구매수수료란 진정한 구매대리인이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해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며, 판매수수료와는 달리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음¹³⁹⁾
 - 구매대리인은 시장정보조사, 샘플 수집, 번역, 구매자의 요구에 맞는 판매자 물색, 구매자의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한 주문, 상품 조달, 생산 협상 지원, 상품 검사 및 포장, 선적 및 대금지급 준비 등을 제공함

- 미국은 “진정한(bona fide) 구매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는 자만이 구매대리인임을 강조함¹⁴⁰⁾
 - 진정한 구매대리인인지 여부는 개별적인 거래와 관련한 사항들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구매자가 대리인을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임
 - 구매대리인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사실, 구매자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등이 진정한 구매대리인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구매자는 구매과정을 통제하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감독을 받으며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함

138) 19 U.S.C. 제1401a조 (b)

139) CBP ICP, “Buying and Selling Commissions,” 2006, pp. 8~9.

140) CBP ICP, 2006, pp. 9~10.

- 진정한 구매대리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요소인 통제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음
 - 어떤 당사자가 상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을 부담 하는가?(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이를 부담하지 않음)
 - 누가 상품의 선적 및 취급 비용을 처리하는가?(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해당 비용을 처리하지 않음)
 - 어떤 당사자가 물품의 대금지급 방법을 통제하는가?(일반적으로 구매대리인은 어떻게 언제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지 통제하지 않음)
 -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긍정인 경우 대리인은 독립적인 판매인일 가능성이 있음)
 - 대리인이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는가?(그렇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구매자가 아니라 판매자를 위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있음)
 - 상업서류는 무엇을 보여주는가?(예를 들어 상업서류에는 당사자를 언급하고 있는지, 구매대리계약서가 있는지, 매매계약서가 있는지 그리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등)

-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대리인이 진정한 구매대리인이 아닌 경우 해당 대리인은 독립적인 판매자/구매자 또는 판매대리인으로 간주됨¹⁴¹⁾
 -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제한 없는 재량권을 행사하고, 물품의 소유권을 갖는 경우 등은 대리인이 독립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한 판매 및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가 어떤 거래인지 검토하여야 함¹⁴²⁾
 - 대리인과 판매자가 특수관계인 경우 진정한 구매대리인임을 증명하기는 더욱 어려우며,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대리인은 판매대리인으로 간주되어 해당 수수료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함¹⁴³⁾

141) CBP ICP, 2006, p. 13.

142) CBP ICP, 2006, p. 11.

143) CBP ICP, 2006, p. 12.

- 대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자에게서 항상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지불한 수수료가 판매자의 이익에 귀속되는 경우 판매대리인으로 볼 수 있음

라) 일본

- 일본도 수입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비용을 더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구매자가 부담하는 증개료·기타 수수료는 가산요소 중의 하나이나 구매수수료는 제외됨¹⁴⁴⁾
 - 「관세정률법」에서는 가산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하여 구매수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구매에 관하여 당해 구매자를 대리하는 자에게 당해 구매와 관련된 업무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수료의 명칭에 따라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구매수수료는 당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입거래에서 수행하는 역할 및 제공하고 있는 역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함¹⁴⁵⁾
 - 구매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관리하에서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
 - 계약의 성립까지의 업무(공급자를 찾고, 구매자의 요구를 판매자에게 통지하거나 표본을 수집하는 업무)
 - 상품의 인도에 관한 업무(물품을 검사하고 물품에 대한 부보, 운송, 보관, 인도를 주선하는 업무)
 - 결제 대행에 관한 업무
 - 기타(예를 들어 클레임 처리에 관한 협상을 수행하는 업무)
 - 구매대리인이 통상의 업무에 추가하여 기타의 역무를 제공하고 당해 역무의 대가를 포함한 수수료를 구매자가 지불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의 총액을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144)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145)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9 (3)

- 당해 수수료 중 수입물품의 구입에 관하여 구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통상의 업무의 대가임을 구매자가 증명한 금액은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취급함
- 일본은 구매대리인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 다음의 경우 구매수수료로 인정할 수 있음¹⁴⁶⁾
-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는 것이 구매위탁계약서 등의 문서에 의해 분명할 것
 -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가 수입물품의 구입에 관하여 구매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다는 실태의 존재가 문서와 기록 기타 자료에 의해 확인될 수 있을 것
 -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매매계약서,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구매자 앞으로 작성한 송품장 등의 제시가 가능할 것
- 또한 「관세정률법 기본통달」은 구매대리인이 구매자, 판매자 또는 판매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도 유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¹⁴⁷⁾
-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가 자기 자금으로 수입물품 대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활동하고 화주로서 손실을 입거나 또는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음
-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가 구매자 앞으로 수입물품대금과 수수료를 병기한 송품장을 작성한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를 수령하는 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될 수도 있음
- 구매대리인이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특수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판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 아래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146)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9 (3)

147)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9 (3)

2) 쟁점 사항

- 주요국 모두 「WTO 관세평가협정」을 수용하여 거래가격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매대행방식 전자상거래의 구매대행수수료가 구매수수료로 인정받는다면 당해 수수료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
 - 따라서 구매대행수수료가 어떤 형식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에 가산되지 않는지, 구매수수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어떤 금액이 가산되는지 또는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구매수수료의 가산 여부는 주요국들이 공통적으로 ① 구매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소유권과 위험의 이전 ③ 구매대리인의 지위 ④ 구매대리인과 판매자의 관계 ⑤ 대금지급 형태 등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판례에서 대리인이 단순 보조자에 불과한지는 물품 수입계약 및 판매계약의 각 당사자, 수입가격 및 판매가격의 결정방식, 수입물품에 관한 위험 부담의 법적 귀속주체, 국내 구매자에 대한 물품 공급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음¹⁴⁸⁾
 -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적인 무역거래와는 상이한 형태의 거래이므로 해당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상적으로 구매대리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공급자 물색, 구매자의 요구사항 전달, 샘플 수집, 물품검사, 보험·운송·보관·인도 등의 주선 등임
 - 전자상거래의 경우 공급자가 온라인 쇼핑몰에 물품판매를 게시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구매자가 수락하는 경우 거래가 성립되므로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샘플 수집, 물품 검사와 같은 용역은 수행하지 않음

14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배송에 어려움을 겪는 구매자를 위해 물품을 자신의 물류 창고로 배송시킨 후 구매자에게 배송하거나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용역을 제공함
 -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에서의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일반적인 구매대리 용역과는 구분되는데,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지 않는 용역에 대하여 구매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추가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성격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 구매대리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구매대리인은 물품의 구매자/판매자로서 거래를 이행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통상적인 구매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계약서에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기로 하고, 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제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음¹⁴⁹⁾
 - 반대로 구매대리인이 자신의 명의로 제조자에게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의 선지급에 따른 위험과 하자보증 책임을 부담한 경우 당해 구매대리인은 실질적인 수출자 또는 판매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하였음¹⁵⁰⁾
 -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상품 주문을 대행하면서 자신의 계산으로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품 하자에 대한 귀책이 구매자에게 있음을 고지하는 등 물품의 소유권이나 위험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또한 구매대리인이 거래내용을 결정하거나 공급자를 선택하고 통제·지시하는 경우 당해 구매대리인은 구매대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임
- 우리나라는 구매자는 구매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특정 물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며, 사실상 구매대리인이 제조업체

149)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두950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7820 판결
 150)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

를 지시·통제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구매대리인은 실질적인 제품의 수출자 또는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시하였음¹⁵¹⁾

- 쇼핑몰형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는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게시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를 선택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한 선택권 보유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구매자는 자신의 원하는 물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고, 해당 물품의 판매자는 구매대행업자가 이미 선택하여 자신의 쇼핑몰에 게시하고 있는 것임
 - 또한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을 당해 구매대리인을 통하여만 구매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구매대리인과 해외 판매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구매대리인과 해외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를 위하여 행동할 가능성이 높음
 - WCO 예해, 미국 ICP,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에서는 구매대리인이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판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행동하는 판매대리인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고 있지 않지만, 최근 판례에서 자회사와 모회사 간에 보통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자회사를 판매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음¹⁵²⁾

- 구매대리인이 대금결제 방식을 통제하거나 직접 대금을 결제하여 대금지급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면 구매자/판매자로 간주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대금결제가 구매대리인을 구매자로 하는 송장이 발행되고 구매자와 구매대리인, 구매대리인과 판매자 사이에서 각각 이루어진 경우 구매대리인을 판매자로 간주하고 있음¹⁵³⁾

151) 부산고등법원 1998. 5. 13. 선고 97구3569 판결

152)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두49320 판결

153)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15063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두7572 판결

-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에서는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구매수수료가 포함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 구매대리인이 해외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결제됨
 - 이 경우 해외 판매자 및 구매대리인의 송장발급 방식, 구매대리인의 물품대금과 구매수수료의 구분 공지 여부 등에 따라 구매대리인이 판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이와 같이 구매수수료의 인정 여부는 다양한 거래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는 특수한 형태의 거래이므로 그 판단이 더욱 어려움
-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과 관계없이 구매대행업자가 지급받는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해외 판매자의 판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함에 따라 저가신고를 하거나, 소액면세를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함

나. 수출판매 여부

1) 주요국 규정

가) WTO

-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는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며, 거래가격은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때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임을 규정하고 있음
- 협정에서는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대한 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지만, 권고의견, 해설, 예해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고 있음
- “판매”라는 용어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평가 목적상 가능한 최대한으로 사

용되어야 함에 따라 가장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함¹⁵⁴⁾

- 권고의견에서는 판매를 해석할 때 유용할 수 있도록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래 등 다음과 같이 판매로 보지 않는 경우를 예시하고 있음
 - 무상탁송물품(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거래)
 - 위탁판매수입물품(판매의 결과가 아닌 공급자의 계산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송부)
 -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수입 후 물품을 판매하는 중개인이 수입한 물품
 - 별개의 법적사업체가 아닌 지점이 수입하는 물품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되는 물품
 - 송하인 소유의 대여 물품
 - 송하인이 수입자에게 용역의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국에서 파기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웨이스트 또는 스크랩)(수입물품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수입물품을 인수하여 파기하는 대가가 지급되는 거래)

- “판매된 때”라는 표현은 단지 관련 거래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을 나타내는 것임¹⁵⁵⁾
 -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기초는 수입을 야기하는 거래에서 결정된 실제 가격이며, 거래가 발생한 시간은 중요하지 않음

-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은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 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거래가격방법으로 물품을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¹⁵⁶⁾
 - 수입자가 해당 거래가 수입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판매가 특정 수출국 내에서 발생할 필요는 없음

154) WCO 권고의견 1.1

155) WCO 해설 1.1

156) WCO 권고의견 14.1

- 둘 이상의 연속적인 물품판매로 구성되는 연속거래에 있어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는 처음 거래 대신에 수입국으로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이전에 발생한 마지막 거래에서 지급한 가격임¹⁵⁷⁾
- WCO 예해에서는 협정에서 연속거래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일반시설, 주해 등을 통해 거래가격은 수입국에 소재한 구매자에 대한 판매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해석함
-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에서 배제하는 요건 중 하나인 처분이나 사용의 제한에 대한 예외인 수입국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구매자는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암시임
 - 거래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수수료, 권리사용료, 생산지원요소 등을 지급·제공하는 당사자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거래의 구매자이고, 수입국의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후이익이 귀속되는 판매자는 처음 거래의 판매자가 아니므로 마지막 거래를 근거로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경우가 전체 거래의 실체를 고려한 것임
 - 또한 협정의 규정에서는 구매자와 수입자를 상호 대체가능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점은 구매자가 수입국에 소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보임
 - 주해에서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국에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마지막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입국에서 보다 더 쉽게 입수할 수 있음
 - 관세평가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 경우도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은 사용되지 않는 점을 보았을 때 흔히 동일 수출국 내의 생산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인 처음의 거래는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아야 함
 - 협정에서는 회원국들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택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거래가격은 단일거래 또는 연속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국에 소재한 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가격이라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임

157) WCO 예해 22.1

나) 우리나라

- 우리나라도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음¹⁵⁸⁾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규정은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WCO 권고의견과 같이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 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 미국

- 미국 역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산출한다고 규정하면서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고 정의하고 있음¹⁵⁹⁾
-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가 “진정한 판매” 및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인 경우 당해 거래가격이 관세의 과세가격이 될 수 있음¹⁶⁰⁾

158) 「관세법」 제30조 제1항

159) 19 U.S.C. 제1401a조 (a) 내지 (b)

160) CBP ICP, “Bona fide sales & Sales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2005, p. 2.

- 물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해당 거래는 “진정한 판매”로 볼 수 있음¹⁶¹⁾
- 판매란 재산의 소유권이 한 당사자에게서 다른 당사자에게로 대가를 바탕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함
 - 재산 또는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은 잠재적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손실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물품의 소유권을 획득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함
 - 따라서 물품이 판매대상이 아닌 위탁선적물품, 선물(기증품)·견본·홍보물품, 임대차 계약에 따른 물품, 대여물품 등은 진정한 판매로 볼 수 없음
 - 또한 진정한 판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매자와 판매자의 역할·기능을 고려해야 하는데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잠재적 구매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매 및 판매수수료 여부를 검토해야 함
 - 판매자에게 지시사항을 제공하는지(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수입물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 판매자와의 협의없이 자신의 고객을 선택하는지(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 자신의 재고를 위하여 수입물품을 주문하고 배송시킬 수 있었는지 여부
-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거래에 의하여 물품이 명백하게 미국으로 수출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함¹⁶²⁾
- 독립기업원칙에 따른 거래란 수입물품의 판매상황을 검토하였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거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따른 거래가격 규정에 따른 비교가격과 차이가 없는 경우임
 - 명백하게 미국으로 수출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거래마다 다르게 결정되어야 하지만, 수입물품을 구매하거나 구매계약을 할 때 물품의 도착지가 오직 미국인 경우를 의미함

161) CBP ICP, 2005, pp. 2~5.

162) CBP ICP, 2005, p. 8.

- 따라서 두 개 이상의 진정한 판매가 이루어진 연속거래가 발생한 경우 최초의 거래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임이 증명된다면 당해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음¹⁶³⁾
- 일반적으로 중간상이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미국의 수입자 또는 수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연속거래가 발생하는데, 외국의 제조자로부터 외국의 중간상이 구매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음

라) 일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에 관계되는 수입거래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¹⁶⁴⁾
- 일본은 수출판매라는 표현 대신 수입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구매자가 일본에 주소, 거소, 본점, 지점 사무실, 사업장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가지지 않은 경우 수입거래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

- 수입거래란 물품을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거래된 때의 매매를 말하며,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수출을 현실적으로 초래한 거래를 말함¹⁶⁵⁾
- 당해 매매는 통상 수출국(또는 제3국)의 판매자와 일본에 거주하는 구매자 사이 또는 일본에 거주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이루어짐
 - 가공임 방식에 의한 위탁가공 무역거래에 의해 외국에서 가공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가공임을 대가로 당해 물품의 매매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거래를 수입거래로 봄
- 다음의 물품은 수입거래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¹⁶⁶⁾

163) CBP ICP, 2005, pp. 6~7.

164) 일본 「관세정률법」 제4조

165)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

166)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의2

- 무상물품(기증품, 견본, 선전용물품)
- 위탁판매를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일본에서 개최되는 경매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탁자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판매자의 대리인에 의해 수입된 후 판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에 의해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물품
-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
- 송하인의 소유권이 존속하는 대여물품
- 동일의 법인격을 가진 본지점 간의 거래에 의해 수입되는 물품
- 일본에서 멸각하기 위하여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멸각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수입되는 물품

□ 이와 같이 일본은 구매자가 일본에 소재하는 거래가 수입거래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면서 복수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취급방법을 열거하여 정하고 있음¹⁶⁷⁾

- 물품이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되기 전에 일본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복수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일본으로의 수출을 초래한 매매를 수입거래로 봄
 - 외국의 도매업자와 일본의 거주자 간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당해 일본 거주자와 제3자인 일본 거주자 사이에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제3자를 수하인으로 물품이 수출된 경우 일본 거주자들 간의 매매가 수입거래가 됨
 - 외국의 도매업자와 일본 거주자 간 물품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도매업자가 당해 외국 또는 제3국의 생산자와 당해 물품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 도매업자와 일본 거주자와의 매매가 수입거래임
- 외국에서 일본 또는 제3국에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에 기초하여 당해 물품이 운송 도중에 당해 매매의 구매자와 일본의 제3자에 의해 일본에 수입되는 경우 당해 제3자를 구매자로 하는 매매를 수입거래로 봄

167)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4-1

- 외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매매에 기초하여 일본에 도착한 물품이 일본 도착 후 또는 보세구역 장치 중에 전매되어 수입되는 경우 당해 전매는 국내거래로 보고, 당해 물품의 일본으로의 도착을 초래한 매매를 수입거래로 봄

2) 쟁점 사항

-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실질적인 구매자/판매자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판매는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 간, 구매대행업자와 구매자 간 두 번에 걸쳐 발생함
 - 이러한 경우 두 개의 판매 중 어떤 판매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인지를 판단하여야 함

- WCO와 주요국 모두 판매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물품의 소유권이 수입 당시에는 이전하지 않는 거래 등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음
 - 이는 판매로 볼 수 없는 거래에 대한 예시적인 사례일 뿐이며, 판매에 대한 정의나 판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음¹⁶⁸⁾

- 미국의 경우 “진정한 판매”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거래가 판매로써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수수료의 가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유사함
 - 판매란 구매자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을 이전받는 것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지시·통제없이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판매할 수 있어야 함

168) WCO 권고의견 1.1에서는 판매로 볼 수 없는 사례는 예시일 뿐이며 다른 사례가 추가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구매대행업자가 대리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매자/판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와 국내 구매자와의 거래 모두 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해외 판매자와의 거래에서는 구매자가 되고, 국내 구매자와의 거래에서는 판매자가 됨

-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에서 연속거래가 발생하였다면, 어떤 거래를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검토하여야 함
 - WCO나 일본은 구매자가 수입국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수입통관 직전에 이루어진 거래를 수출판매(수입거래)로 보고 있으므로 구매대행업자와 국내구매자의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으로 봄
 - 우리나라의 경우 구매수수료 여부를 다루는 다수의 판례에서 구매대리의 범위를 넘어선 역할을 수행하는 구매대리인을 실질적인 판매자로 보고 있는데, 이는 구매대행업자와 국내 소비자의 거래를 수출판매로 인정하기 때문임
 - 해외 판매자와 구매대행업자의 거래를 수출판매로 인정하였다면 구매대행업자를 실질적인 구매자로 판시하였을 것임
 - 반면 미국은 연속된 거래가 모두 진정한 판매에 해당하고, 미국으로 수출될 것을 예정하고 있다면 두 개의 거래가격 중 낮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¹⁶⁹⁾ 봄에 따라 해외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의 거래가 수출판매가 됨

-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연속거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검토할 수 있음
 - 대법원이 국내 구매자의 편의나 판매자의 판매촉진 등과 관련한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 사업자가 있더라도 국내 구매자가 물품을 수입한 실제 화주라고 판결한 사례로 인정사실은 다음과 같음¹⁷⁰⁾

169) 김기인, 『관세평가정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5, p. 78.

170) 대법원 2016. 11. 27. 선고 2014두2270판결

- 국내 구매자는 해외 판매자의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함
- 해외 판매자는 본인의 계산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의 도매업자에게 구매하여 현지 창고에 보관함
- 국내 구매자가 구매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통관하는 때에 해외 판매자가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도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음
- 국내 구매자가 상품의 하자로 반품 및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국내 사업자에게 반송되고, 이를 국내 사업자가 처리함
- 국내 사업자와 해외 판매자는 친족관계이며, 국내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이 입금된 해외 판매자의 계좌를 국내 사업자가 관리함
- 이에 따라 처분청은 해외 판매자를 지배·통제하는 국내 사업자가 해당 쇼핑몰의 운영자이므로 이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하므로 국내 사업자를 실제 화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처분함
- 이에 국내 사업자가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하였으며, 원심은 이를 기각함¹⁷¹⁾
- 국내 사업자의 항소심에서 대법원은 물품의 실제 화주는 국내 구매자라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 당해 거래에서 해외 판매자가 도매업자에게 구매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이유는 당해 거래를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판매로 보았기 때문이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일본, WCO는 수입신고 직전에 이루어진 거래를 수출판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거래의 가격은 과세가격이 될 수 없음
- 수출 판매를 위한 거래 중 최초의 거래에서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는 미국의 경우도 최초 거래에서 수입국의 수출이 예정되어 있어야 함을 요건으로 하는데 해당 거래의 경우 도매업자로부터 구매 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이

171)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2011구합2718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2누28348 판결

를 충족하지 못함

-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물품이 주문되어 제조된 후, 선적 당시 마지막 거래에서 미국으로 송부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음¹⁷²⁾
- 즉, 해외 판매자가 도매업자에게 구매할 당시에 우리나라로 수출될 것이 정해져 있었거나 도매업자가 물품을 우리나라로 직접 송부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수출 판매로 인정될 수 있음

- 국내 사업자를 쇼핑몰의 실제 운영자로 보고 해당 전자상거래를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아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이나 원심의 판결 또한 판매자와 물품의 화주(구매자)를 동일한 자로 보게 되는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됨
 -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2008. 1. 8. 관세청 고시 제 2008-1호로 개정된 것)에 따르면 수입쇼핑몰형 거래란 전자상거래업체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 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거래로 수입통관 시 수입화주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됨
 - 따라서 수입쇼핑몰형 거래의 경우 해외 판매자와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거래가 수출판매를 위한 수입거래이며, 과세가격도 당해 거래가격이 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업체와 국내 구매자와의 거래는 국내거래이므로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이 될 수 없음
 - 처분청과 원심은 국내 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국내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과세처분 또는 판결하였고¹⁷³⁾, 이는 수입쇼핑몰형 거래에서 국내거래로 보는 거래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을 과세한 결과를 초래함
 - 만약 처분청과 원심이 국내 사업자와 실질적 판매자인 국내 구매자의 거래를 수입거래로

172) CBP ICP, 2005, p. 8.

173) 처분청의 과세통지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원심의 인정사실에서 '수입신고가 국내 소비자가 이 사건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미국 판매자가 미국 도매업자로부터 구매한 가격으로 하였다'고 밝힌 점으로 보아 국내 구매자의 구매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보임

보아 과세처분 또는 판결한 것이라면 당해 거래는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볼 수 없음

- 그러나 처분청과 원심은 해당 거래를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아 수입화주를 국내 사업자로 과세한 처분 또는 판결하였고, 결국 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이 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됨
 - 처분청이나 원심에서 당해 거래를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는 경우, 국내 사업자와 국내 구매자와의 거래는 국내거래로 보고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인 국내 사업자와 해외 도매업자의 거래가 수출판매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제2방법 내지 제6 방법에 따른 과세가격으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또는 당해 거래를 국내 구매자가 물품을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거래로 인정하고, 국내 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해외 판매자와 해외 도매업자와의 거래가격이 아닌 해외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국내 구매자에게 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국내 사업자를 보조적 행위를 행하는 자로 판단한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국내 사업자가 판매 촉진, 반품 등의 처리를 수행하면서 해외 판매자에게 지급 받는 수수료 등의 성격이나 구매 사업자의 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위험의 부담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와 같이 연속거래에 있어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과세하는 것은 매우 어려움
-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연속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형태가 매우 다양함에 따라 어떤 거래가 수출판매로 인정될지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우리나라로의 수출을 위한 판매 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낮은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 역시 저가신고, 부당 면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 보세창고도 거래 물품의 FTA 적용

-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물류비용 및 처리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있음¹⁷⁴⁾
 -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란 글로벌 전자상거래 업체의 제품을 반입·보관하고, 품목별로 분류·재포장한 후 해외 개인주문에 맞춰 제품을 배송하는 국제물류센터임
 -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활용한 배송방식은 최초 수출국을 출발할 때 최종 목적국이 정해지지 않는 보세창고도 거래의 일종임

- 이러한 보세창고도 거래는 FTA 협정상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하거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최근 전자상거래 물품 중 과세되는 금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보세창고도 거래를 통해 배송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협정의 직접운송 규정을 살펴보고,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고자 함

가. 협정별 규정

1) 직접운송 규정이 있는 경우

- 우리나라는 아시아, 유럽국가와의 FTA에서는 원산지상품이 계약상대국 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174) 관세청 보도자료,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국내 유치를 위한 GDC 유치 민관합동 추진단 발족」, 2018. 4. 30.

- 다만 계약상대국이 아닌 제3국에서 환적하거나 물품의 상태를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위해 경유한 경우 비계약국의 경유운송을 허용함
- 직접운송 규정이 있는 FTA의 경우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는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상이함
 - 즉, 협정별로 경유국에서 행하지 않아야 하는 작업 또는 할 수 있는 작업을 명시하거나, 물품이 운송되는 형태를 규정함으로써 보세창고도 거래의 인정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음
-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FTA의 경우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경유국인 물류센터에서 최종 구매자와의 거래가 확정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함
 - 특히, 한-아세안, 한-중국, 한-베트남 FTA는 제3국 경유를 지리적·운송상 이유가 있는 경우만 허용함에 따라 보세창고도 거래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한-EU, 한-터키, 한-영국 FTA는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물품만이 비계약국에서 환적 또는 보관 후 운송될 수 있음을 규정하여 물류센터에서 분류·재포장·배송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
 -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따라 또는 단일의 송품장에 따라 다루어지는 제품을 의미함¹⁷⁵⁾
 - 따라서 경유국가에 소재한 물류센터에서 다수의 수하인에게 분할·배송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단일 탁송화물이 아니므로 협정세율 적용이 불가함

175)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카, 「한-터키 F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조, 「한-영국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카

- 반면 한-EFTA FTA는 한-EU, 한-터키, 한-영국 FTA와 동일한 의미의 탁송품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직접운송 예외 규정에 탁송품의 분리를 명시하여 보세창고도 거래를 허용하고 있음
 - 즉, 비당사국인 경유국가에서 하역·재선적·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작업뿐 아니라 탁송품의 분리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물류센터에서 일부 물품만이 당사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한-EFTA FTA 부속서 I의 주해에서도 다음과 같은 경우 협정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 신고서를 수출 이후에 제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운송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예시도 들고 있음¹⁷⁶⁾
 - 수출자가 탁송품에 포함된 개별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했을 경우
 - 탁송품이 운송 중에 분리되었을 경우
 - 특정 상품에 적용되는 원산지 신고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경우

〈표 III-3〉 한-EFTA FTA 탁송품 분리 직접운송 인정 예시

예시 1. 한국 수출 시	예시 2. 스위스 수출 시
<p>한국 수출자는 선박을 이용해 유럽으로 상품을 보낸다. 일반적으로 해당 화물의 목적지는 비당사국의 항구이고 하나의 단일 탁송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에서 출발할 때 수출자는 해당 탁송품에 포함된 개별 상품의 최종목적지를 모른다. 운송 중에 탁송품의 일부를 EFTA의 한 회원국에 운송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나머지는 비당사국에 있는 고객에게 운송될 수 있다. 비당사국의 항구에 도착 즉시 화물은 보세창고에 보관된다. 보세창고에 있고 관세당국의 감시하에 있는 동안, 해당 단일 탁송품은 분리된다. 일부는 비당사국에 있는 고객에게 인도되고 나머지는 더 운송되어 EFTA 회원국의 고객에게 인도된다. EFTA 회원국에 도착 즉시 수입자는 수출 이후, 즉 운송·보관 중에 발행되는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한다.</p>	<p>스위스의 한 회사가 스위스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하나의 화물로 유럽연합(예, 네덜란드-제3국)에 있는 보세창고에 일시 보관을 위해 수출한다. 한국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주문을 토대로 초기 화물의 일부가 한국으로 보내진다. 그때, 스위스 수출자는 소급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발행하고 이를 한국의 수입자에게 송부한다. 원하는 경우 한국의 관세당국은 생산자부터 네덜란드까지의 전체 운송을 포괄하는 스위스로부터의 운송서류와 네덜란드로부터 한국으로의 운송을 포괄하는 운송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스위스 및 네덜란드에서 발행되는 운송서류에는 한국으로 수입된 특정 제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다.</p>

자료: 「한-EFTA FTA」 부속서 I(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의 주해 제14조의 주석

176) 「한-EFTA FTA」 부속서 I(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의 주해 제14조의 주석

- 한-싱가포르,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중미 FTA는 보세창고도 거래를 허용하는 규정은 없지만,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세창고도 거래를 직접운송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제3국에서 세관통제하에 있고, 물품 수송 등을 위한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이 발생하지 않으면 보세창고도 거래도 인정가능하나 체약국에서 제3국으로의 운송 서류, 제3국에서 우리나라로의 운송서류 등을 확인하여 물품의 동일성 여부는 확인되어야 함¹⁷⁷⁾
 -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에서는 한-칠레 FTA상 직접운송 원칙을 상기와 같이 해석하면서 한-싱가포르 FTA도 이와 준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한-싱가포르 FTA와 직접운송 규정이 유사한 형태인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중미 FTA의 경우도 보세창고도 거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표 III-4〉 직접운송 규정이 있는 FTA

FTA	근거 규정
한-아세안	<p>〈제9조 직접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혜 관세 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경유하는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을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을 것
한-인도	<p>〈제3.15조 직접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적으로 수송된 상품에 적용된다.

177)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직접운송 요건 확인 요령 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확인 요령[제3국 보세구역 거래의 경우] 〈한-칠레 FTA〉

〈표 Ⅲ-4〉의 계속

FTA	근거 규정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이외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송되더라도 직접적으로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p> <p>가.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p> <p>나.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데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그리고</p> <p>다.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세관의 통제하에 남아있었어야 한다.</p>
한-페루	<p>〈제3.14조 직접운송〉</p> <p>1. 원산지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원산지 상품은 양 당사국 간 직접운송되어야 한다.</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상품은 수출 당사국에서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p> <p>가.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운송된 상품, 그리고</p> <p>나. 그러한 비당사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적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p> <p>1)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거래되거나 교역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p> <p>2)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아야 한다.</p> <p>3.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명된다.</p> <p>가. 경유 또는 환적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 그리고</p> <p>나. 보관의 경우,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국가로부터 수입국으로의 운송을 증명하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복합 또는 결합 운송 문서와 같은 운송 문서와 더불어 그 비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작업을 승인한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행한 문서</p>
한-중국	<p>〈제3.14조 직접운송〉</p> <p>1.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하는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운송된다.</p> <p>2.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에서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그러한 비당사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 보관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p> <p>가. 통과를 위한 상품의 반입은 지리적 이유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p> <p>나.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할 것, 그리고</p> <p>다.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의 분리, 그리고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정 외에 비당사국에서 그 밖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p>

〈표 III-4〉의 계속

FTA	근거 규정
	<p>상품이 이 항에 규정된 대로 비당사국에서 일시 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보관되는 동안 그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비당사국에서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당사국에 상품이 보관되는 기간은 상품의 반입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p> <p>3. 이 조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서류가 상품의 수입 신고 시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다.</p> <p>가.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에는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p> <p>나. 보관 또는 컨테이너를 적출하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 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결합운송 서류와 같은 운송서류, 그리고 비당사국 관세당국이 제공하는 증빙서류, 수입국 관세당국은 그러한 증빙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당사국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을 지정하고 그러한 지정에 대하여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보할 수 있다.</p>
한-베트남	<p>〈제3.8조 직접운송〉</p> <p>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p> <p>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운송되는 것으로 간주한다.</p> <p>가. 그 통과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p> <p>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p> <p>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p>
한-콜롬비아	<p>〈제3.15조 직접운송〉</p> <p>1. 비당사국의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이 증명될 수 없는 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p> <p>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 이유로 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p> <p>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하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p> <p>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한다는 것</p> <p>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함으로써 제공된다.</p>

〈표 III-4〉의 계속

FTA	근거 규정
	<p>가. 비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또는</p> <p>나. 비당사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고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적시하는 서류</p>
한-EU	<p>〈제1조 정의〉</p> <p>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p> <p>〈제13조 직접 운송〉</p> <p>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자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p> <p>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p> <p>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p> <p>나.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p> <p>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한-터키	<p>〈제1조 정의〉</p> <p>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p> <p>〈제13조 직접운송〉</p> <p>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p> <p>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하여 제공된다.</p> <p>가. 비당사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p> <p>나. 수출 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p>

〈표 Ⅲ-4〉의 계속

FTA	근거 규정
	<p>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한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한-영국	<p>〈제1조 정의〉</p> <p>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p> <p>〈제13조 직접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협정에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하여 직접적으로 운송되는 제품에만 적용된다. 그러나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 다만 그 제품이 통과 또는 창고보관하는 국가에서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반출되지 아니해야 하고, 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공정 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해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나. 수출 당사국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또는 <p>다.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한-EFTA	<p>〈제1조 정의〉</p> <p>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p> <p>〈제14조 직접 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 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표 III-4〉의 계속

FTA	근거 규정
한-싱가포르	<p>〈제4.15조 직접운송〉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상품은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p> <p>가. 상품이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직접운송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나. 상품이 이 협정상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거나 환적된 경우 수입자가 제5.9조 다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p> <p>〈제5.9조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다. 상품이 이 협정상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영역을 통하여 선적되거나 그 영역에서 환적된 경우 그 상품의 수입자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요청하는 다음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p> <p>(1)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세관관리문서의 사본 (2) 하역·재선적·크레이팅·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비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이 제공하는 정보, 또는 (3) 하역·재선적·크레이팅·포장·재포장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밖의 작업 이외의 작업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제출하는 그 밖의 정보 또는 상업서류</p>
한-호주	<p>〈제3.14조 직접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p> <p>가.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보관, 재포장, 재라벨링,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p>
한-뉴질랜드	<p>〈제3.16조 직접운송〉 1. 원산지 상품은 제3.2조에 따라 결정된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그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비당사국 영역을 통하여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지 아니한다.</p>

〈표 III-4〉의 계속

FTA	근거 규정
	<p>가.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p> <p>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p>
한-중미	<p>〈제3.14조 직접운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품이 그 원산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은 경유국에서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을 조건으로 수출당사국에서 수입당사국으로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그 상품이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있을 것, 그리고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 및 재선적, 재포장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이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3.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증거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하여 제공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수출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운송서류 나. 경유국으로부터 수입당사국까지의 통과를 다루고 있는 운송서류와 다음을 포함하고 있는 경유국 관세당국이 발행한 증명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품의 정확한 설명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그리고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 또는 <p>다. 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제4장(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설립된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와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위원회에서 당사국들이 합의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만족시키는 모든 입증 서류</p>

자료: 「한-아세안 FTA」 부속서 3 원산지 규정 제9조, 「한-인도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5조, 「한-페루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4조, 「한-중국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 절차 제3.14조, 「한-베트남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8조, 「한-콜롬비아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15조, 「한-EU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 「한-터키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 「한-영국 FTA」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 및 제13조, 「한-EFTA FTA」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제1조 및 제14조, 「한-싱가포르 FTA」 제4장 원산지 규칙 제4.15조 및 제5장 통관절차 제5.9조 다항, 「한-호주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14조, 「한-뉴질랜드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16조, 「한-중미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3.14조

2) 직접운송 규정이 없는 경우

- 아메리카 국가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와의 FTA에 직접운송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비당사국을 통과·환적된 물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하역·재선적·상품 보존 또는 운송에 필요한 작업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은 직접운송 규정을 명시한 FTA와 동일함

- 따라서 일반적으로 직접운송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FTA의 경우 체약국에서 수출하는 때에 최종 수입국이 정해지지 않고, 비당사국에서 보관되었다가 체약상 대국과의 거래가 성사된 경우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다만 일부 FTA의 경우 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작업에 추가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물류센터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와 같은 보세창고도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한-칠레, 한-미국 FTA는 비당사국 영역에서 세관 통제하에 하역·재선적·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또는 운송에 필요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한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하면서 보세창고도 거래를 인정하고 있음
 - 특히 한-칠레 FTA의 경우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될 때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기한의 제한을 두지 않아 보세창고도 거래와 같이 비당사국의 일시보관이 아닌 경우도 특혜를 허용하고 있음

- 반면 한-캐나다 FTA의 경우 한-칠레, 한-미국 FTA와 동일하게 직접운송 규정을 두지 않고 통과·환적 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나 상품이 비당사국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을 명시함으로써 보세창고도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비당사국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작업으로 운송상의 이유로의 분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한-EFTA에서의 탁송품의 분리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거대 중량, 선적 일정 등을 이유로 분할 선적되는 경우를 허용하는 것임

〈표 III-5〉 직접운송 규정이 없는 FTA

FTA	근거 규정
한-칠레	<p>〈제4.12조 환적〉 상품이 제4.2조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 상품이 생산된 후 당사국 영역 밖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하역, 재선적, 상자포장, 포장과 재포장 또는 상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까지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다른 종류의 작업 이외의 추가적 생산이나 작업을 거친 경우, 또는 나. 비당사국의 영역 내의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하에 있지 않은 경우</p> <p>〈통일규칙 제6-1조〉 1. 협정 제4장 및 제5장의 목적상, 일방당사국의 상품이 제3국을 통하여 운송될 경우 가. 최종 목적지가 기재된 선하증권이 제3국에서 발급되는 경우,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은 그 상품이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까지의 운송경로 및 모든 선적·환적 경로를 나타내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과 같은 증빙서류로 입증되어야 한다. 나. 제3국을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환적된 수출당사국 상품에 대하여 수입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기간 제한은 두지 아니한다.</p>
한-미국	<p>〈제6.13조 통과 및 환적〉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p>
한-캐나다	<p>〈제3.16조 통과 및 환적〉 비당사국 영역을 통해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은 다음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된다. 가. 그 상품이 하역, 운송상 이유로 인한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 이외에,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어떠한 추가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다는 것 나. 그 상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에서 세관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 그 상품이 그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아니하는 것</p>

자료: 「한-칠레 FTA」 제4장 원산지 규정 제4.12조 및 공통규칙 제6.1조, 「한-미국 FTA」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6.13조, 「한-캐나다 FTA」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6조

나. 쟁점 사항

- 전자상거래 물품이 FTA 체약상대국에서 생산되고,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는 등 FTA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 우편으로 수입되는 경우 간이통관 시 또는 일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2011년 9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간이통관 우편물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해짐¹⁷⁸⁾
 - 특송을 이용하여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 FTA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은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에 따른 간이신고 배제대상임

- 최근 세계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는 신속하고 저렴한 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거래형태를 통하여 수입되는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가 주로 위치하고 있는 홍콩으로부터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신고되는 물품의 금액 비중이 매우 높음
 - 2016년, 2017년의 수입신고 비율은 목록통관 물품 금액의 2배를 초과하고 있음
 - 홍콩을 경유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은 알리바바 등 거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류센터를 설립하기로 결정함에¹⁷⁹⁾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체약상대국에서 수출되어 홍콩에서 일시보관 후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178)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1-40호, 2011. 9. 30.] 제정·개정 이유

179) 해사정보신문, 「알리바바, 홍콩국제공항에 물류센터 설립」, 2018. 6. 14.

〈표 III-6〉 전자상거래 물품 대(對) 홍콩 수입 현황

(단위: 건, 천달러)

	목록통관		EDI 수입		총합	
2016	401,260	15,547	199,750	45,892	601,010	61,439
2017	628,000	25,072	230,000	56,056	858,000	81,128
2018	1,616,126	74,526	318,574	80,312	1,934,700	154,838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일자: 2019. 7. 1.

-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에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FTA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 물품이 수출국인 계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다른 국가를 경유하지 않고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원산지 상품 지위를 인정하는 직접운송 원칙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직접운송 원칙은 FTA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직접운송에 대한 규정은 하지 않지만 경유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을 제한하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이용한 거래는 보세창고도 거래의 일종으로 이러한 거래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 여부는 협정별 직접운송 규정의 명시 여부, 경유국에서 가능한 작업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됨
 - 우리나라가 체결한 17개의 FTA중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해 직접운송 원칙을 충족했다고 인정하는 협정은 한-EFTA, 한-싱가포르,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중미, 한-칠레, 한-미국 FTA임
 - 반면 보세창고도 거래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협정은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한-중국, 한-베트남, 한-콜롬비아, 한-EU, 한-터키, 한-영국, 한-캐나다 FTA임

- 2018년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중국, 독일, 영국,

호주 등에서 수입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미국, 호주만이 보세창고도 거래를 인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 수입신고 금액이 목록통관 금액보다 많으며, 해당 물량은 글로벌 물류센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된다 하더라도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
- 영국과 EU 국가인 독일, 프랑스는 금액뿐 아니라 건수를 기준으로도 수입신고 비중이 더 많으며, 이는 FTA 협정세율 적용의 필요성이 높음을 의미함
 - EU의 경우 홍콩, 싱가포르에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한-EU FTA 발효 초기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을 우리나라에 요구하기도 함¹⁸⁰⁾

〈표 Ⅲ-7〉 2018년 국가별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 현황

(단위: 건, 천달러)

국가	목록통관		EDI 수입		총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7,428,780	623,079	8,816,950	848,518	16,245,730	1,471,596
중국	6,238,418	260,402	241,268	49,868	6,479,686	310,270
일본	1,684,827	89,136	909,481	83,254	2,594,308	172,390
홍콩	1,616,126	74,526	318,574	80,312	1,934,700	154,838
독일	1,143,052	57,870	1,256,726	154,942	2,399,778	212,812
영국	377,001	32,837	525,457	205,533	902,458	238,370
프랑스	286,198	15,258	62,431	15,817	348,629	31,076
호주	100,246	5,227	188,198	17,518	288,444	22,745
기타	283,597	20,728	777,930	120,119	1,061,527	140,847
계	19,158,245	1,179,064	13,097,015	1,575,880	32,255,260	2,754,944

자료: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457, 검색 일자: 2019. 7. 1.

180) 최영훈, 「한-미 FTA 이해 - 직접운송원칙(4) -」, 『관세무역정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12. 12. 17.

- 이와 같이 동일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 협정별 규정이 상이함에 따라 수입자의 FTA 특혜적용이 어려우며, FTA의 취지와 다르게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특히 전자상거래를 주로 이용하는 개인이 여러 FTA 규정을 인지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협정세율 적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반면 수입자가 협정별 규정을 모두 알고 있는 경우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직접 운송 원칙을 충족 여부가 물품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음에 따라 보세창고도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FTA에 대한 무역장벽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거점별 물류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물품과 같은 보세창고도 거래 물품에 대한 협정별 규정을 일관성 있게 정비하는 등 직접운송 원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직접운송 원칙은 계약국 물품이 아닌 제3국 물품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IV. 시사점

1.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분류

- WTO 차원의 전자상거래의 성격이나 분류 등의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분류가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분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하며, 현재는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이 유예되고 있음
 - 전자적 무체물에 대한 분류 문제의 경우 EU는 용역으로 분류하자는 입장이며, 미국과 일본은 물리적 대체물이 존재하는 디지털 콘텐츠의 전송은 물품으로 분류하자는 입장을 보임
 -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관행의 경우 미국과 일본은 무관세 영구화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우리나라와 EU는 무관세를 유지하되 WTO의 결정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임
-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부재로 인하여 당해 무체물이 국경을 넘어 전송·다운로드되는 경우 관세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음
 - 이로 인하여 당해 무체물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관세가 과세되지 않음
 -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세관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 국내 반입을 위한 요건 구비 등이 강제되지 않음

- 전자적 전송물의 분류가 3D 프린팅 등 차세대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세 관련 법령의 적용에 따른 과세차별 등의 문제를 넘어서 기존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3D 프린팅 설계도면의 생산지원, 3D 프린팅으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 및 그로 인한 특혜 또는 비특혜 적용과 같은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음
-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비춰볼 때, 온라인 거래 상품의 전자상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자적 무체물을 「관세법」상 수출입 개념에 포섭하여 수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므로 외국의 입법례와 동향을 살펴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전자적 무체물의 관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주시하며, 디지털 통상규범이 국익에 맞는 내용과 형식으로 발전하도록 국제적 규범 형성 과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의 관세 부과에 관한 연구는 그 범위와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정부와 학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련 논의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

2. 소액물품의 과세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 납세자의 편의와 관세행정 비용의 절감 등을 위하여 특례통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거나 복잡한 규정 및 기준으로 인하여 원래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 소액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례통관제도에 대한 문제점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더 부각되고 있음

-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소액물품에 적용되는 면세규정은 과세형평, 과세회피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를 통해 반입하는 소액물품은 관세 등이 면제됨에 따라 국내 소매판매 업체를 통해 구입한 소비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음
 - 국내 소매판매 업체를 통해 구입한 소비자의 경우 아무리 소액의 물건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음
 - 현행 제도상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를 초과하는 자가사용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이를 저가신고 또는 허위신고하여 과세회피 문제가 있음
 - 또한 자가사용 목적으로 소액면세받은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분산 반입하여 재판매하는 문제가 있음

- 이러한 기존 취지에 어긋난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세수손실을 유발하며, 건전한 전자상거래 문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제도상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 요구됨

- 한편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통관에 규정은 우편물과 특송물품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각 규정 간 세부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관세법」과는 별도로 소액물품의 통관 특례 규정들이 여러 가지 하위고시로 분산되어 있음

- 「관세법」상 특송물품은 우편물과 같이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고시상으로는 간이세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음
 - 실무적으로 전자상거래 물품 중 우편물만 간이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 배송되는 방법에 따라 세율의 적용이 달라짐

- 또한 우편물과 특송물품에 적용되는 간이통관 방법이 각 관련 고시에 별도로 규정됨에 따라 그 신고절차와 기준, 배제대상이 상이함
 -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 수입되더라도 우편을 통해서 배송됐는지, 특송을 통해서 배송됐는지에 따라 간이통관 적용 여부, 신고방법 등이 달라짐

- 따라서 「관세법」과 별도로 하위고시에 분산되어 있는 소액물품의 통관 특례 규정 간의 세부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하기 위해 상이·중복되는 내용을 검토하고, 간이통관과 간이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일률적인 법령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의 경우 일반무역거래와는 달리 구매자가 물품의 배송방식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통일된 절차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우편물과 특송물품의 통관절차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실무적으로 각 물품에 대한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당해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함
 - 우편물의 경우 물품의 검사, 통관에 대한 결정 등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 또는 특송물품의 경우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간이신고 절차가 일반수입신고 절차와 큰 차이가 없으므로 간이신고 규정을 삭제하고 목록통관과 일반수입통관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송물품의 간이신고는 일반수입신고 항목 중 일부항목의 기재가 생략될 뿐 동일한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특송물품의 1% 미만이 간이신고를 통하여 통관되고 있음
 - 따라서 간이신고 폐지에 대한 납세자의 순응도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통관절차의 단순화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구매대행 거래의 관세평가 방법

-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에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전자상거래 유형이 매우 다양하게 변형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점임
 - 전자상거래를 전자상거래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전자상거래업체의 역할 등을 유형화시킨다면 당해 유형별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수수료,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 등을 규정할 수 있지만 전자상거래 방식이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매우 어려움
 -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를 구매자 직접 구매,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구분하지만 최근에는 배송대행업체가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형구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음
 - 또한 전자상거래업체가 제공하는 용역, 그들이 부담하는 책임이 각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여 유형화하는 것은 쉽지 않음

- 관세청에서도 기존에는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¹⁸¹⁾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유형을 구분하였으나 전자상거래 영업유형 변화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이를 삭제함¹⁸²⁾
 - 당해 고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직접 구매, 배송/결제대행형 거래, 수입대행형 거래,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구분하여 신고방법 등을 명시하였음¹⁸³⁾
 - 수입쇼핑몰형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가 수입화주로서 자기의 명의로 수입 신고 및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타 거래의 경우 국내 구매자가 수입화주가 되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였음¹⁸⁴⁾

181) 2014. 6. 16. 관세청고시 201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82)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4-77호 2014. 6. 16] 제정·개정 이유

183)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4-30호 2014. 3. 12] 제1-3조,

184)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2014-30호 2014. 3. 12] 제2-2조, 제3-1조

- 수입소핑몰형 거래는 전자상거래업체를 실질적인 구매자로 보아 해외 판매자와 전자상거래업체와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임¹⁸⁵⁾
- 다만 배송/결제대행형 거래, 수입대행형 거래의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를 단순 대행업체로 보아 해외 판매자와 국내 구매자와의 거래가격에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결정하여 과세할 것인지,
- 또는 전자상거래업체가 단순 대행업무 범위를 넘어선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업체와 국내 구매자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¹⁸⁶⁾

- 또한 전자상거래에서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그에 대한 대가를 국내 구매자와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려워 당해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할지, 구매대행업자의 역할을 무엇으로 볼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대부분의 구매대행업자는 구매자에게 자신의 판매가격만을 고지하고 있으며, 해당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음
 - 판매가격이 해외 판매가격, 해외 현지 세금, 해외 현지 운송료, 국제 운송료, 국내 관세 및 제세금, 구매대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지만 각 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은 고지하지 않음
 - 또한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주문 대행 외에 물품검사, 하자보증, 클레임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지 명확하게 공시하고 있지 않음
 - 배송절차 안내, 교환 및 환불 안내 등을 통하여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무엇인지 추측이 가능한 정도임

185)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것이므로 소액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186) 조심-2015-부-1223 등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서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2014. 6. 16. 관세청고시 2014-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함을 근거로 전자상거래업체를 수입대행업자로 판단하여 구매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나 당해 고시상 수입대행형 거래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세법」상 구매수수료를 지급받는 구매대리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 다만 물품의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공시하고 있는 구매대행업자의 경우 자신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선지급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전자상거래라는 특수한 거래형태 때문에 일반적인 구매수수료, 수출판매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임
 - 전자상거래는 판매자가 고지하는 물품의 상세, 거래조건을 바탕으로 구매자가 구매를 선택하는 절차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구매자가 거래가격에 대한 협의를 하거나 판매자에게 지시·통제를 할 수 없음
 - 특히 구매대행방식의 경우 구매자가 해외 판매자를 직접 선택하기가 어렵고 구매대행업자를 선택하는 것으로 거래가 이루어짐
 - 대부분의 구매대행업자는 구매대행하는 해외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판매자에 대한 선택권 또는 지시·통제권, 거래조건 결정권 등을 기준으로 구매대행업자가 실제 구매자 또는 판매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함
- 이와 같이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거래의 방식,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있어 일괄적인 판단은 어려우며, 각 거래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관세를 확정하는 신고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내 구매자가 구매대행업자의 판매금액의 구성 내역, 제공받는 용역의 범위 등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하여 구매대행업자가 구매자와 과세관청에게 해외 판매자, 판매 금액, 책임관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 기존의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서 수입대행형 거래에 대한 공시 항목을 규정한 것과 유사한 형태의 규정의 마련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동 고시에서는 거래상대방 정보 및 물품정보, 총지급액 구성내역, 거래책임 관계 등을 국내 구매자와 계약 전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그 세부항목을 별표1에 명시하였음¹⁸⁷⁾

- 이와 같이 제공받은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어떻게 과세가격을 결정할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구매대행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어떤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구매대행업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때에 물품의 실질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 현재 우리나라는 「관세법 시행령」에서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지만, 당해 사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에 대한 규정도 판매로 볼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예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 대부분의 구매대행방식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통관대행 업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실제 수입신고 업무를 이행하는 구매대행업자에게 정확한 납세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의 마련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자상거래의 이용자는 수입통관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부족한 개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므로 수입통관 역시 구매대행업자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매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구매대행업자가 저가신고를 하거나 부당한 면세신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함
 - 따라서 해외 판매자에게 구매주문을 대리하면서 수입통관 업무도 처리하는 전자

187) 「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14-30호2014. 3. 12] 제1-3조 제3호

상거래 업체에게 수입신고 시 수입자로 신고¹⁸⁸⁾하도록 하는 등 사후 조사나 감사를 통하여 벌칙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보세창고도 거래 물품의 FTA 적용

-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수입된 물품이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 직접운송원칙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며, 물품의 수출국 및 원산지국에 따라 협정세율의 적용 가능 여부가 상이함

- FTA 협정별 상이한 직접운송규정은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에서 수입된 전자상거래 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협정세율 적용의 필요성은 점차 커질 것으로 보임
 - 세계적인 거대 전자상거래업체들이 동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홍콩·싱가포르 등에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있으며, 당해 물류센터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최근 통관 현황을 통해 살펴본 국내 구매자의 전자상거래 물품의 구매성향이 고가의 제품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세통관보다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한 협정세율 적용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임

- 이에 따라 FTA 체약국과의 이행위원회를 통하여 직접운송규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으나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를 생각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직접운송원칙은 비체약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특혜를 적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협정국 간의 배타적 특혜 협정인 FTA의 기본이 되는 원칙임

188) 국내 구매자는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여야 함

- 따라서 FTA 협정문상의 직접운송규정을 개정하기에 앞서 원산지 상품이 경유하는 비체약국에서 허용되는 작업 외의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물품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비체약국에서 발급되는 서류의 종류, 발급 절차, 발급기관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실제로 FTA 발효 초기에 EFTA 및 EU 국가에서 발급되는 T1, 중국의 재화청단, 홍콩의 비가공증명서, 싱가포르의 비조작증명서 등의 발급요건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증빙 확인에 혼선이 있기도 했음
 - EU와 같이 체약상대국이 보세창고도 거래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국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해외 물류센터, 당해 물류센터가 위치하는 국가에서 사용되는 운송서류 및 작업증명서류의 종류, 발급요건 등에 대한 정보교환이 필요함

- 반면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와 같은 보세창고도 거래를 각 FTA 협정에서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증명 등 협정세율 적용 요건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특혜를 받을 수 있음
 -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은 체약당사국 간에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원산지 증명서가 수입신고 시 또는 수입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제출되어야 함

- 전자상거래 특성상 직접운송원칙 외의 다른 적용요건들을 구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대한 직접운송원칙을 인정하는 실익 여부도 고려해야 함
 - 해외 판매자인 전자상거래업체는 물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가 많고, 다수의 구매자에게 소량으로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거래 건별로 유효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하여 국내 구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수입신고 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협정세율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
- 그러나 각 FTA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없이도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에서는 비교적 소액의 물품이 주로 수입되므로 당해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음
- 소액면세 한도는 초과하지만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에는 해당하는 금액의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함
 -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페루, 한-EU, 한-미국,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영국 FTA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 한-아세안 FTA는 200달러, 한-인도 FTA는 소포 및 휴대품, 한-중국 FTA는 700달러, 한-베트남 FTA는 6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이와 같이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통한 전자상거래 수입물품에 대한 직접운송 인정은 원산지 상품의 보호, 협정세율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함
- 이러한 사항들의 검토 후 직접운송원칙의 예외로 해외 거점별 물류센터를 통한 거래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제약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협정의 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세청 보도자료,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국내 유치를 위한 GDC 유치 민관합동 추진 단 발족」, 2018. 4. 30.
- 권현호, 「전자상거래 통상규범 형성을 위한 다자적 접근의 한계」, 2018. 2.
- 김문환·이성환·정영철·박재수·나강·신찬호, 「通關段階 知的財産權保護範圍 擴大方案 研究」, 2007. 12.
- 김빛마로·유현영·김민경, 『디지털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12.
- 김정곤·나승권·장종문·이성희·이민영,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 김충호, 「특송물품 통관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8권 제1호, 2017. 2. 28.
- 박지현, 『WTO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9.
- 박형래, 「글로벌시대 전자상거래와 수출입통관」, 『한국관세포럼』, 한국무역협회, 2006.
- 서진교·김종덕·박지현·김민성·엄준현, 『제11차 WTO 각료회의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1.
- 심충진·정규언, 「유형재화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7. 6.
- 유재걸,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2003. 2.
- 정지선·구자은, 『전자상거래 관련 세제의 동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보고서, 2014. 7.

최동오·박석호, 「전자상거래관련 통상문제의 WTO 규범적용」, 한국국제통상학회 학술대회, 2010.

해사정보신문, 「알리바바, 홍콩국제공항에 물류센터 설립」, 2018. 6. 14.

CBP ICP, “Bona fide sales & Sales for exportation to the Unired States,” 2005.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2015. 10. 5.

_____, *OECD Guide to Measuring the Information Society*, 2011.

_____, “Taxation and Electronic Commerce-Implementing the Ottawa Framework Conditions”, 2001.

WTO, “JOINT STATEMENT ON ELECTRONIC COMMERCE(WT/MIN(17)/60),” 2017. 12. 13.

_____,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Classification Issue Submission from the European Communities (WT/CG/W/497),” 2003. 5. 9.

_____,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 Submission by the United States(WT/GC/16),” 1999. 2. 12.

_____, “1998a. Global Electronic Commerce: Proposal by the United States(WT/GC/W/78),” 1998. 2. 9.

_____,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DEC/2),” 1998. 5. 25.

일본 경제산업성, *Electronic Commerce on WTO*, 1999. 5. 11.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법제처, <https://easylaw.go.kr>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501085500009>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미국 예산정책우선센터(CBPP), <https://www.cbpp.org>

일본 관세국, <http://www.customs.go.jp>

일본 외무성, <https://www.mofa.go.jp>

EU집행위원회, <https://ec.europa.eu>

부록 I.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통관 서식

1.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

국제우편물 현장과세 안내서

우리세관에서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국제우편물 중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리 세금을 부과하여 우편물 수령시 납부하도록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우편물에 대한 세금산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 귀하께서 반입하신 물품은 통관번호 [] 번으로,
과세가격 ₩ [], 세율 []%로서, 납부하실 세금은 ₩ []입니다.
※ 귀하의 우편물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면 전체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세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 세율 = 세금

- 세금산정 방법
- 세금 = 과세가격 × 세율
 - 과세가격 : 물품가격에 우편요금, 보험료, 수수료를 합한 금액
 - 물품가격 : 우편물에 첨부된 송품장상의 가격 또는 우편물 신고서에 기재된 가격
 - 세 율 : 관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간이세율

※ 주요물품의 간이세율표

품 명	세 율 (%)	품 명	세 율 (%)
모피제품	30	신발, 의류	25
기타 일반물품	20		

- ※ 관세가 무세인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세 10%만 부과됩니다.
※ 우체국에서는 관련규정에 의거 특급 및 소포우편은 ₩0,000, 통상우편(등기, 준등기)은 ₩0,000의 통관회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총납부하실 금액 = 세금 + 통관회부료(₩0,000 또는 ₩0,000)
 기타 국제우편물 통관절차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0000.go.kr>, ☎ 00)0000-0000

년 월 일

0000 세 관 장

2.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기본형)

아래 우편물은 ○○○○국제우편세관의 통관 또는 반송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도착일자	
품명	참고사항	통관대상물품	

1. 귀하의 우편물은 통관대상물품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통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사유	통관 방법
통관대상물품 (미화150불초과등)	- 개인 자가사용 물품은 ① 간이통관 신청(간이통관신청서와 가격자료 첨부) - 판매용 등 일반수입신고대상 물품은 관세사에 의뢰하여 ② 일반(정식)수입신고

2.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세관에 ① 간이통관 신청 또는 ② 일반(정식)수입신고 중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우편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45일 연장 가능)에 ○○○○우편세관에 통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관기간경과로 반송 될 수 있습니다.(국제우편규정 제31조)

① 간이통관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물품	① 개인 자가사용물품 ② 해외 구매는 미화 1,000달러 이하 ③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	① 판매용 물품 ②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③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④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방법	①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는 첨부된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② 접수 후 세관 담당자가 연락(2~3일 소요)	방법	① 관세사 선정(관세사 수수료 발생) ②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송품장 등 관련서류 필요)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cba.or.kr) 참조
문의	간이통관 000-000-0000	문의	일반수입신고 000-000-0000
*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기재)			

[간이통관/반송 신청 방법]
 ㉠ 스마트폰: 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로 모바일관세청 간편 접속)→ 우편물통관→ 개인인증 후 신청
 ㉡ 컴퓨터(PC):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신청
 ㉢ 이 메 일: 〇〇〇〇@korea.kr, ㉣ 팩스(FAX) : 000)000-0000, 000-0000
 ㉤ 우 편: 〇〇광역시 〇〇구 〇〇로 〇〇번길 〇〇〇〇국제우편세관 〇〇〇〇과

[간이통관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 자가사용물품 과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시
- 반입제한물품: 가짜(위조)상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성분불분명 의약품, 총포(모의총포), 도검, 조준경, 음란물, 용담 등
- 우편물을 해외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는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 신청”란에 체크, 사유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〇〇〇〇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〇〇〇〇.go.kr>) 참고

관련기관 연락처			
검역 문의	동물 : 000-000-0000 식물 : 000-000-0000	도착, 보관, 배송문의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0000

〇〇〇〇국제우편세관장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건강기능식품·의약품)

아래 우편물은 ○○○○국제우편세관의 통관 또는 반송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도착일자	
품명			참고사항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1. 귀하의 우편물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통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사유	통관 방법
건강기능식품 · 의약품 등	※ 자가사용 인정기준: 6병(의약품의 경우 6병 초과시 3개월 복용 분량) ① 6병 초과 시: 분할통관(6병 통관, 나머지 반송) * 단 국내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수량만큼 통관가능 ② 판매용의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득한 후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 6병 이내라도 통관불가 유해성분 함유 시 통관 제한 - 이카린, HORNY GOAT WEED, 요힘빈 등 (통관불가 유해성분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	

2.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세관에 ① 간이통관 신청 또는 ② 일반(정식)수입신고 중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우편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45일 연장 가능)에 ○○○○우편세관에 통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관기간경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국제우편규정 제31조)

① 간이통관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물품	① 개인 자가사용물품 ② 해외 구매는 미화 1,000달러 이하 ③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 물품	① 판매용 물품 ②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③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④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방법	①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는 첨부된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② 접수 후 세관 담당자가 연락(2~3일 소요)	방법	① 관세사 선정(관세사 수수료 발생) ②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송품장 등 관련서류 필요)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cba.or.kr) 참조
문의	간이통관 000-000-0000	문의	일반수입신고 000-000-0000
*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기재)			

[간이통관/반송 신청 방법]
 ㉠ 스마트폰: 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로 모바일관세청 간편 접속)→우편물통관→개인인증 후 신청
 ㉡ 컴퓨터(PC):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신청
 ㉢ 이 메 일: ○○○○@korea.kr, ㉣ 팩스(FAX): 000)000-0000, 000-0000
 ㉤ 우 편: ○○광역시 ○○구 ○○○로 ○○번길 ○○○○국제우편세관 ○○○○과

[간이통관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 자가사용물품 과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시
- 반입제한물품: 가짜(위조)상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성분불분명 의약품, 총포(모의총포), 도검, 조준경, 음란물, 웅담 등
- 우편물을 해외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는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 신청”란에 체크, 사유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go.kr>) 참고

관련기관 연락처			
검역 문의	동물: 000-000-0000 식물: 000-000-0000	도착, 보관, 배송문의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0000

○○○○국제우편세관장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아래 우편물은 ○○○○국제우편세관의 통관, 반송 또는 폐기 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도착일자	
품 명			참고사항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1. 귀하의 우편물은 지식재산권 침해(가짜상품)의심 물품입니다.

선별사유	통관 방법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 지식재산권 침해(가짜상품) 물품은 관세법 제235조에 의해 수출입할 수 없습니다. - 가짜상품일경우 아래 ①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또는 폐기 신청, 진정상품일 경우 아래 ② 통관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진정 상품일 경우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세관에 ① 간이통관 신청 또는 ② 일반(정식)수입신고 중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우편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45일 연장 가능)에 ○○○○우편세관에 통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관기간경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국제우편규정 제31조)

①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또는 폐기 신청	② 통관신청(진정상품일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에 반송 또는 폐기 신청 체크하여 아래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상품일 경우 「간이통관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 하여 아래 방법으로 간이통관신청 (판매용은 반드시 관세사를 통해 일반수입신고하여야 함)
문의	전화 000-000-0000
*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기재)	

[간이통관/반송 신청 방법]

- ㉠ 스마트폰: 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로 모바일관세청 간편 접속)→ 우편물통관→ 개인인증 후 신청
- ㉡ 컴퓨터(PC):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신청
- ㉢ 이 메 일: ○○○○@korea.kr, ㉣ 팩스(FAX): 000)000-0000, 000-0000
- ㉤ 우 편: ○○광역시 ○○구 ○○○로 ○○번길 ○○○○국제우편세관 ○○○○과

[일반(정식) 수입신고 신청 방법]

- 거래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송품장 등 관련서류 필요)
- 거래관세사 없는 경우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에서 관세사 검색 후 수입신고 의뢰(<http://www.kcba.or.kr>)

[간이통관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 자가사용물품 과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시
 - 반입제한물품: 가짜(위조)상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성분불분명 의약품, 총포(모의총포), 도검, 조준경, 음란물, 응답 등
 - 우편물을 해외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는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 신청"란에 체크, 사유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 ※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go.kr>) 참고

관련기관 연락처			
검역 문의	동물: 000-000-0000 식물: 000-000-0000	도착, 보관, 배송문의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 1588-0000

○○○○국제우편세관장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모의총포·조준경·도검)

아래 우편물은 ○○○○국제우편세관의 통관 또는 반송절차가 필요하여 ○○○○우체국에 보관중입니다.

통관번호		우편물번호		발송국		중량(g)	
보내는사람			받는사람			도착일자	
품명			참고사항	모의총포, 조준경, 도검 등			

1. 귀하의 우편물은 모의총포, 조준경, 도검 등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통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사유	통관 방법		
모의총포 조준경 도검 등	조준경	모의총포	도검(15cm이상)
	조준선 또는 조준점이 있고 그 조절기능이 있는 것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총안법시행령)	월도, 장도, 단도, 검, 창, 치도, 비수, 비출나이프(5.5cm이상), 재크나이프(6cm이상), 기타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도검(6cm이상)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의 허가	* 총안법에 의거 모의총포 수입금지 (제조, 판매, 소지금지)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서
	* 절차: 통관신청시 모의총포, 조준경 등 해당여부 검사의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검사수수료 개인부담(자가사용 55,000원/건당)) ⇒ 모의총포, 조준경 해당 시 위 허가사항을 득하여 통관 또는 반송 비해당 시 통관가능		인천지방 경찰청 생활안전과

2.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는 ○○○○우편세관에 ① 간이통관 신청 또는 ② 일반(정식)수입신고 중 하나를 반드시 하여야 하며, 우편물 도착일로부터 15일 이내(수취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45일 연장 가능)에 ○○○○우편세관에 통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보관기간경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국제우편규정 제31조)

	① 간이통관	② 일반(정식) 수입신고
대상 물품	① 개인 자가사용물품 ② 해외 구매는 미화 1,000달러 이하 ③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 (판매용 물품은 가격 상관없이 일반 수입신고)	① 판매용 물품 ② 해외 구매 미화 1,000달러 초과 ③ 선물로 받는 경우는 500만원 초과 ④ 동식물식품 검역 등 세관장 확인대상
방법	①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 @@@는 첨부된 간이통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② 접수 후 세관 담당자가 연락(2~3일 소요)	① 관세사 선정(관세사 수수료 발생) ② 관세사에 수입신고 의뢰(송품장 등 관련서류 필요) ※ 한국관세사회 홈페이지(http://www.kcba.or.kr) 참조
문의	간이통관 000-000-0000	일반수입신고 000-000-0000

*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메일(○○○○@korea.kr)로 문의하시면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관번호 기재)

[간이통관/반송 신청 방법]

- ㉠ 스마트폰: 모바일 관세청(우측QR코드로 모바일관세청 간편 접속)→우편물통관→개인인증 후 신청
- ㉡ 컴퓨터(PC):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업무지원→국제우편물통관→신청
- ㉢ 이 메 일: ○○○○@korea.kr, ㉣ 팩스(FAX): 000)000-0000, 000-0000
- ㉤ 우 편: ○○광역시 ○○구 ○○○로 ○○번길 ○○○○국제우편세관 ○○○○과

[간이통관 신청시 유의사항]

- 개인 자가사용물품 과세: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시
 - 반입제한물품: 가짜(위조)상품, 마약류, 오·남용 우려의약품, 성분불분명 의약품, 총포(모의총포), 도검, 조준경, 음란물, 용담 등
 - 우편물을 해외로 반송하고자 할 경우는 간이통관 신청서의 “반송 신청”란에 체크, 사유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
- ※ 통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제우편세관 홈페이지(<http://○○○○.go.kr>) 참고

관련기관 연락처

검역 문의	동물: 000-000-0000 식물: 000-000-0000	도착, 보관, 배송문의 (우체국)	우편고객만족센터 1588-0000	:
----------	--------------------------------------	--------------------------	-----------------------	---

○○○○국제우편세관장

3.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1. 통관대상 우편물

통관번호		중 량(g)	
우편물번호		수 취 인	
신고품명		도착일자	년 월 일

2. 아래 내용을 작성한 후 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Fax)번호: 000) 000-0000~0 이메일 주소: ○○○○@korea.kr

우편물 내용 (품명·수량 등)	※ 상세히 기재
우편물가격 및 배송료	○ 물품가격: (화폐단위:) ※ 영수증 및 인터넷 화면 캡처(전자상거래) 등 가격자료 제출시 신속한 처리 가능 ○ 물품가격에 배송료 포함 여부(<input type="checkbox"/> 미포함, <input type="checkbox"/> 포함) ○ 전자상거래(인터넷) 구매 물품인 경우 (구매사이트 주소) (경매 낙찰번호)
수취 사유	<input type="checkbox"/> 개인구매 <input type="checkbox"/> 선물 <input type="checkbox"/> 재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세히 기재) ※ 해당사항에 체크(판매용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대상임)
반송 및 폐기 신청	<input type="checkbox"/> 반송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침해부분 변경 후 반송) (사유 :※ 반입제한, 수취거절 등) ※ 부분반송을 희망하는 경우 사유란에 상세히 기재
FTA협정관세 적용 신청 (※대상자만 체크)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미국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캐나다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input type="checkbox"/> 기타() ※ FTA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며,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대상인 경우에는 구매처(국가), 가격 정보가 기재된 구매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대상자만 체크)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예' 선택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번호:
세금 납부 방법	<input type="checkbox"/> 계좌이체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납부 <input type="checkbox"/> 수취시 현금납부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로텍스(www.cardrotax.kr) 사이트 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이용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담당자에게 직접 알려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간이통관을 신청합니다.

20

3. 신청인 (성명) _____ [인 또는 서명] (수취인과의 관계) _____
(전화번호, 휴대폰) _____

관세연구 19-02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발 행 2019년 10월 31일

저 자 정다운 · 이재선 · 김미정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주)계문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ISBN 978-89-8191-983-2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관세연구 19-02

전자상거래 물품의 관세 과세상 쟁점사항 분석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